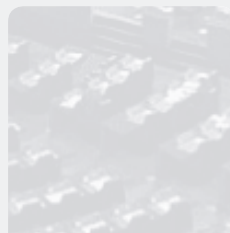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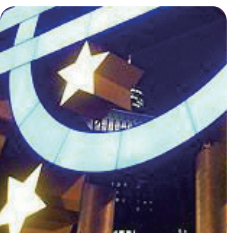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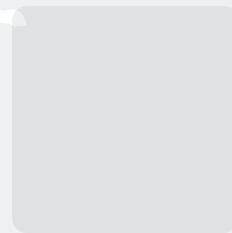


EU

유럽연합 개황

2010. 9



EU 상징기

(The European Emblem)



- 12개 별의 개수는 '완벽함' 상징

- 12는 전통적으로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
(일년 12달, 시계의 12시간 등)

- ※ 회원국의 수와 별의 개수는 무관하기 때문에 07년 EU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별의 숫자는 유지됨

- EU 공식 깃발 채택 경위

- 1955년 인권보호와 유럽문화 증진에 힘쓰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현 깃발디자인의 '유럽기' 고안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1983년 유럽기를 공식 깃발로 채택
 - 1986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정상회의에서 유럽 연합의 상징으로 채택

EU 회원국 국기



독 일



프랑스



영 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 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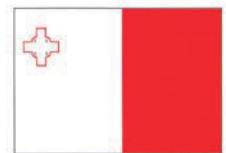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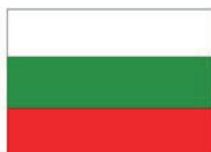
사이프러스



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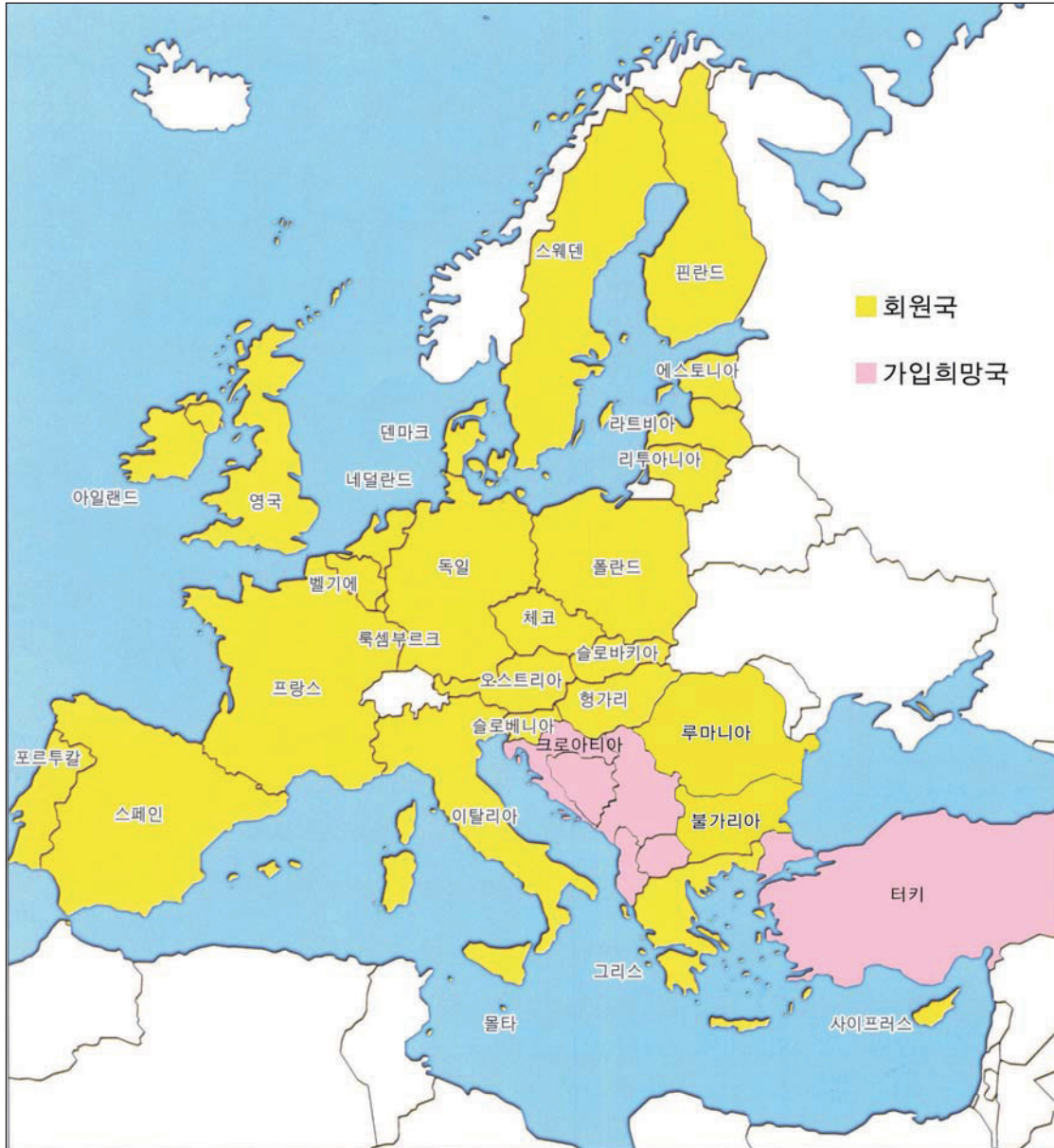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지도



EU / NATO / OSCE 회원국 비교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1949년 설립된 집단방위기구. 처음에는 동유럽에 주둔하는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구소련 붕괴후에는 지역적 안정 유지 역할을 담당
-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1975년 헬싱키에서 냉전시대의 동서간 대화증진 및 인권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 기원. 94년 OSCE로 이름을 개칭하고,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과 군비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활동

목 차 ::

I. 개 관	1
II. EU 형성과정	5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7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7
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8
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8
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9
III. EU 구조	13
1. EU의 목적	15
2. EU 조약의 기본구조	15
3. EU의 기구	17
IV. EU 최근 동향	35
1. 리스본조약 발효	37
2. EU 확대	38
3.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41
4. 내무사법 협력	47
5. EU 경제동향	51
6. 공동통상정책(리스본조약 이후)	52
7.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56

V. 한-EU 관계	61
1. 연 혁	63
2. 개 관	63
3. EU의 대한반도 정책	64
4. 한-EU간 대화채널	64
5. 경제·통상 관계	75
VI. EU-북한 관계	85
1. EU의 대한반도 정책 기초	87
2.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	88
3. EU-북한 고위인사 교류	89
4. EU-북한 정치대화	89
5. 북한 핵문제	89
6. 북한 인권 문제	91
7. EU의 대북한 지원	92
부 록	95
■ 주요인사 인적사항	97
■ European Union Institutions - Web Sites	101

I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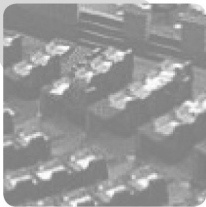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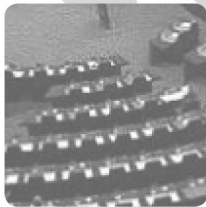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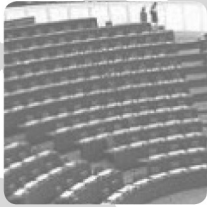


- 명 칭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 회원국(27개국) :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 창립일자 : 1993.11.1
- 주요 연혁
 - 19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출범
 - 19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1967.7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 19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 1993.11.1 유럽연합 출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 1999.1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 1999.5 암스테르담조약 발효
 - 2003.2 니스조약 발효
 - 2004.5 EU 25개국 확대(중동구 10개국 가입)
 - 2004.10 EU 헌법조약 초안 서명
 - 2007.1 EU 27개국 확대(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 2007.12 개혁조약(리스본조약) 서명
 - 2009.12 리스본조약 발효
- 인 구 : 약 5억1백만명(2010)
- 전체 GDP : 약 16.2조달러(2009)
- 1인당 GDP : 29,729달러(2009)
- 교역규모 : 약 3.2조유로(2009)

- 주요기구 : 이사회(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
- 이사회 의장국 :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스페인(2010.1~6)
 - 벨기에(2010.7~12)
 - 헝가리(2011.1~6)
 - 폴란드(2011.7~12)
 - 덴마크(2012.1~6)
 - 사이프러스(2012.7~12)
 - 아일랜드(2013.1~6)
 - 리투아니아(2013.7~12)
 - 그리스(2014.1~6)
- 한-EU 교역(한국기준, 2009년도)
 - 수출 : 466억달러, 수입 : 322억달러
 - ※ 2010.1.1~7.20간 수출입 실적 : 수출 291억달러, 수입 206억달러
- 한-EU 투자
 - 대 EU : 201.6억달러(2009.9월말 누계)
 - 대 한국 : 564억달러(2009년말 누계)
 - ※ EU는 누계기준 제1위의 대한민국 투자 주체

II

EU 형성과정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 제1,2차 세계대전의 주원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 경제 계획청장인 Jean Monnet의 구상을 빌어, 석탄 및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 선언을 50.5.9 발표
 - Monnet 청장은 당시 무기 제조 자원인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초국가적인 기구가 공동 관리하고 공동시장 운영을 통해 전쟁을 막는 구상을 제시
 - ※ EU는 5.9 슈망 선언 발표일을 유럽의 날(EU Day)로 확정
-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동 제의를 수락(영국은 거부)하여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이 52.8월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발족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은 석탄, 철강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결성에 합의
- 57.3월 로마에서 EEC 창설조약 및 EURATOM 창설조약 서명(로마조약)
 -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 회원국간의 상품·인력·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 경제·산업·사회·재무·재정분야 공동정책을 통해 단일시장을 형성
 -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은 공동에너지 시장 창설, 핵 원료 균형 공급 보장, 핵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

3 유럽공동체(EC)의 성장

- ECSC, EEC, EURATOM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들을 통합하여 67.7.1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을 체결, 각각의 집행부를 통합하여 이사회(Council), 집행위(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으로 단일화
 - 신설 기관들이 모든 공동체 업무를 관장하고 공동 예산 제도 실시
 - 3개 공동체가 사실상 단일공동체로 발전하고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ies)로 통칭
- EC는 단일경제권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 철폐와 대외공동관세),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EC 역내 환율안정 구상을 발전시켜 1979.3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발족
-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EC에 가입, EC는 12개 회원국으로 확대

4 단일시장의 출범과 유럽연합(EU)의 발족

- 12개 EC 회원국들은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57년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를 86.2월 체결(87.7월 발효)
 - 동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93.1월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
- 역내 단일시장이 완성됨에 따라 유럽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통합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 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합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

- 경제통합 가속화 및 정치통합을 위해 EC 12개국은 91.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고 93.1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출범
- 유럽연합은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제도적으로 한층 발전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도입하여 정치 분야의 통합과 내무사법(JHA : Justice and Home Affairs)협력까지 포함하는 3柱(three pillar)체제의 공동체로 발전
- EU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이 95.1월 가입, 총 15개 회원국으로 확대

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가. 회원국 확대

- 97.6월 암스테르담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정치·내무사법 통합을 강화하고 중·동구 국가들과의 EU 확대 협상을 위해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97.10월 동 조약에 서명
- 98.3월부터 우선 협상 대상 6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과 회원국 확대 교섭 개시
- 99.5.1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되어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되고 경제 통합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2000.3월부터 2차 가입협상 대상 6개국(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과의 가입 협상 개시

- 2000.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 암스테르담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 및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니스조약” 채택에 합의하고 2001.2.26 동 조약에 서명
- 2002.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중동구 10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의 EU가입 협상이 완료되어 2004.5.1 EU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
- 2007.1.1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하여 27개국으로 확대

나. EU 개혁조약(리스본조약) 발효

- EU는 경제·통상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치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 향후 EU 확대 이후 EU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 등 EU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기로 결정
- EU 장래문제협의회와 정부간 회의를 통해 헌법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4.6월 EU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 2004.10.29 로마에서 헌법조약에 서명하고 비준 개시
- 그러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헌법조약(안)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이후, EU는 1년간 숙고기간을 통해 EU의 초국가성 관련 용어와 상징 등을 삭제하고 EU의 효율적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조약(안)을 수정
- 2007.6월 EU 정상회의는 헌법조약(안) 대신 개혁조약(Reform Treaty : 소위 Lisbon 조약)을 추진기로 합의하고, 2007.12월 리스본에서 개혁조약에 서명
- EU회원국들은 헌법조약(안)과 달리 의회를 통해 비준했으나, 헌법규정에 따라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는 2008.6.12 리스본조약을 부결
- 2008.12월 EU 정상회의에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① 중립정책 ② 윤리·사회·가정 관련 아일랜드 국내법 존중 ③ 독립적 조세 정책, ④ 1국 1집행위원

체제 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키로 합의함으로써, 리스본조약은 2009.10월 실시된 아일랜드의 제2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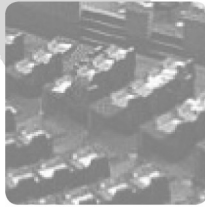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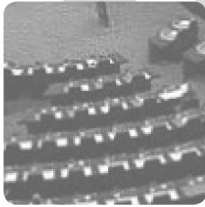
- 2009.11.3 EU 27개 회원국 중 체코가 마지막으로 동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2009.12.1 리스본조약 발효

〈리스본조약의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 EU 정상회의가 EU의 정식기관으로 편입
 - 순환 의장국을 대신하여 임기 2년 6개월(1회 연임 가능)의 상임의장 선출
 - * 각료 이사회에서는 기존과 같이 의장국 순환제 유지(외교이사회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주재)
- 회원국 외교장관에 상응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 기존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과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직의 업무 통합
 -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SFP) 수행 및 외교이사회 주재
 - * 기존의 일반 및 대외관계 이사회(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Council, GAERC)는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 GAC)와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 FAC)로 분리
 - 고위대표는 집행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집행위내 업무 조정 담당
 - * 고위대표 업무 지원을 위한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신설
-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
 - 이사회 결정방식을 ① 회원국 55%(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② EU 전체인구 65% 찬성 요건으로 단순화
 - * 니스조약하에서는 상기 2개 요건 외에 국별 가중치 요건(255/345표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리스본 조약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요건을 삭제
- EU에 독자적인 법인격 부여
 - 국제협상 및 국제협약 체결의 주체로서 EU의 실체 인정
-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의 권한 강화 등
 - 공동결정(Co-decision)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 분야를 기존의 43개에서 90여개로 확대함으로써 유럽 의회의 권한 강화
 - * 공동결정 절차는 이사회와 의회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필요시 양측 모두 거부권 행사 가능

III

EU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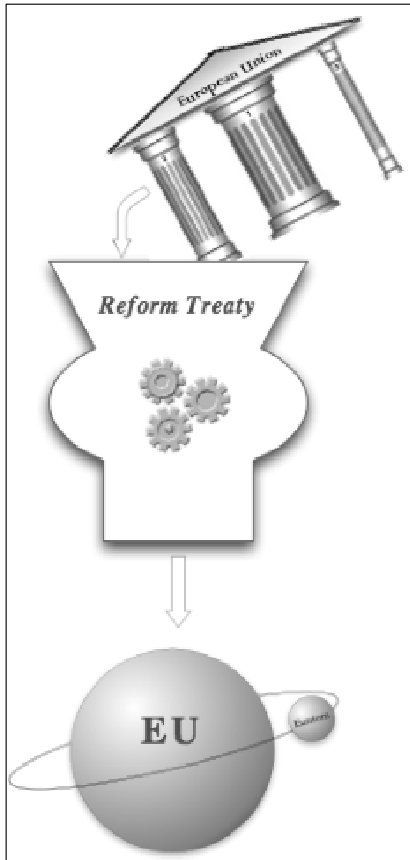
1 EU의 목적

-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
-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 ‘자유·안전·정의’의 공동영역으로 발전
- 기존의 통합 성과(acquis communautaire)의 유지·발전

2 EU 조약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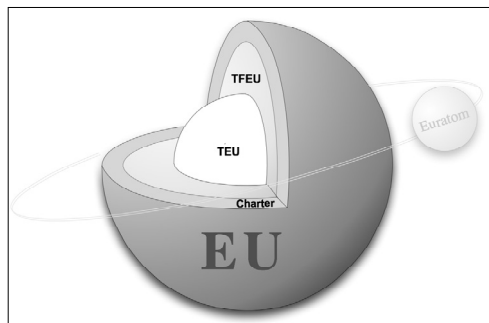
- 유럽연합조약은 별도 공동체의 신규 창설이 아니라 단일 유럽의정서처럼 기존 EC조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를 수정, 보완, 신기능을 추가
 - 기존 EU 조약은 제1 pillar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 EURATOM, EC, ECSC), 제2 pillar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제3 pillar로 내무사법 협력의 3주체제(three-pillar system)
- 리스본조약 발효로 EU 조약 체계는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암스테르담 EU 조약 개정) 및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기존 EC 조약 수정)를 중심으로 운영
 - ※ 기존 제3주 경찰 및 사법 협력은 공동체(기존 제1주)의 틀내로 편입(communitarised) 되었으며, 공동외교안보정책만이 EU 조약 수준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

〈 EU 조약의 기본구조 〉



〈그림 1〉 삼주체제 변화

(출처 : Christa Tobler외, Essential EC Law in Charts, www.eur-charts.eu)



〈그림 2〉 새로운 EU metaphor

(출처 : Christa Tobler외, Essential EC Law in Charts, www.eur-charts.eu)

3 EU의 기구

가. 개 관

- EU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EP),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회계감사원(ECA) 등 5개 기관이 EU의 핵심 기구
- 이외에 아래 5개 기관이 주요기구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 Social Committee) :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시민사회의 입장 대변 역할
 -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발전 촉진 기능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유로존 통화정책 관리
 -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 EU 기구의 행정권 남용 견제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 EU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 성 격

- ‘각료이사회’라고도 칭하며 EU 회원국 각 분야별 각료(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EU의 주요정책들을 결정
-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부간 협력체(inter-governmental co-operation)로서 정치적 중요성 보유

(2) 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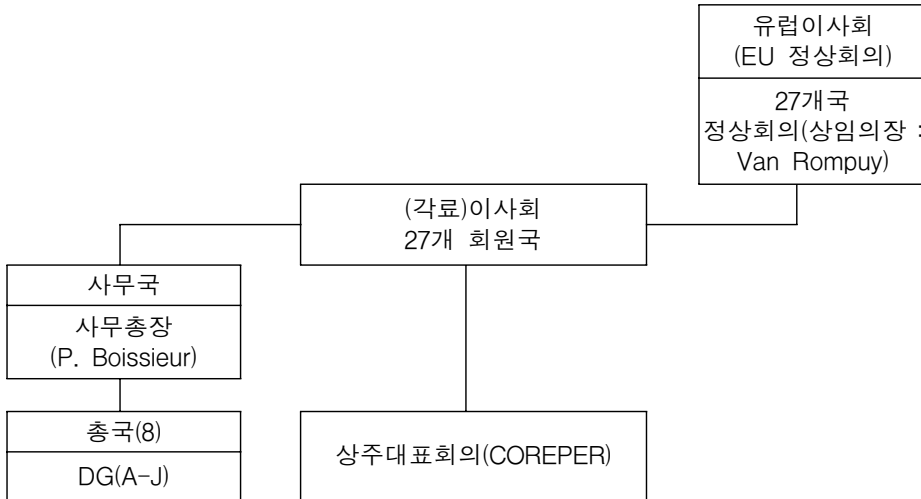
- 유럽의회와 더불어 집행위의 제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 니스조약체제하에서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으나, 리스본 조약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와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를 일반입법절차

-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로 규정하는 등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사법분야에서는 이사회가 여전히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유지
- 회원국간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하며, EU 정상회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이행
- 집행위가 편성·제안한 예산안을 유럽의회와 공동으로 심의·확정하며, 집행위에 대해 EU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위임하고 최종적인 협정체결권을 행사

(3) 구 성

- 외교, 일반, 경제·재무, 내무·사법,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 경쟁,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 이사회 등 10개의 각료 이사회로 구성
 -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
 - ※ 이중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 FAC), 경제재무이사회(Ecofin) 및 농업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되며, 통상 매달 1회 개최
- 사무국은 사무총장(현 총장 : Pierre de Boissieur, 임기 5년) 산하 8개의 총국으로 구성되며, 6개월마다 순환되는 의장국을 보조하는 것이 주임무
 - 상근 직원 : 약 3,200여명
- 상주대표회의(COREPER)는 연중 개최되는 각종 각료이사회 회의에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브뤼셀에 파견한 상주대표부 대사로 구성되며, 다양한 전문가위원회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지원을 받아 각료급 회의를 지원하는 역할 수행(매주 1회 개최)

〈 이사회 조직 구조 〉



(4) 운영

- 이사회에는 의장국제도가 있어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순환의장국 제도)
 - ※ 리스본조약 발효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9개 각료이사의 경우 순환 의장국제도를 유지하나, 외교이사는 신설된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는 순환의장국 제도를 폐지

〈 각료이사회 연도별 순환의장국(2007-2014) 〉

년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007	독일	포르투갈
2008	슬로베니아	프랑스
2009	체코	스웨덴
2010	스페인	벨기에
2011	헝가리	폴란드
2012	덴마크	사이프러스
2013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2014	그리스	이탈리아

-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 QMV)이며, 마스트리히트조약·니스조약·리스본조약 등을 거치며 만장일치제의 적용 범위가 현저히 감소
 - 가중다수결제는 과거 주로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니스조약(2003), 리스본조약(2009) 등을 통해 사회부문,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일부 내무·사법분야 정책 이행조치, E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임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
- 리스본조약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의 국별 투표권(가중치) 요건을 없애고, 2014년부터 회원국 55%,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라는 이중다수결제(Double Majority) 적용 예정
 - 니스조약하의 가중다수결 요건은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찬성 국가의 인구합계가 전체의 62% 이상 및 총 345표 중 255표 이상(가중다수결 부결을 위한 최소투표수(blocking minority)는 69표)

〈 니스조약상 각료이사회 의사결정의 국가별 투표권 가중치 〉

국명	2005.1 이전	2005.1 이후	인구규모 (%)	국명	2005.1 이전	2005.1 이후	인구규모 (%)
독일	10	29	17.05	불가리아		10	1.21
영국	10	29	12.31	오스트리아	4	10	1.68
프랑스	10	29	12.25	슬로바키아		7	1.12
이탈리아	10	29	11.97	덴마크	3	7	1.10
스페인	8	27	8.19	핀란드	3	7	1.07
폴란드		27	8.04	아일랜드	3	7	0.78
루마니아		14	4.67	리투아니아		7	0.77
네덜란드	5	13	3.28	라트비아		4	0.51
그리스	5	12	2.19	슬로베니아		4	0.41
체코		12	2.14	에스토니아		4	0.30
벨기에	5	12	2.12	사이프러스		4	0.16
헝가리		12	2.10	룩셈부르크	2	4	0.09
포르투갈	5	12	2.07	몰타		3	0.08
스웨덴	4	10	1.84				
				총계	87	345	100

※ 니스조약상 가중다수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 345표 중 255표 이상 찬성 필요

다.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1) 성격

- EU 각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이사회나 집행위 차원에서 회원국 정부의 입장이나 의지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주목, 정상차원의 자유로운 토의 및 정치적 합의를 통해 EU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등장
 - 1974년 파리 정상회의시 연 3회 개최기로 결정한 이후 정례화되었으며, 리스본조약을 통해 공식 기관으로 변모
- EU 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광의의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점점 더 많은 주요 사안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

(2) 구성 및 운영

- 구성원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및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
- 정상회의는 연 4회 브뤼셀에서 개최
 - 일반이사회(GAC)에서 회의 의제 검토

(3) 기능 및 활동

- EU의 제도적·정치적 발전과 관련된 주요한 정치적 결정(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은 이사회, 유럽의회 등이 수행)
- EU 조약 제정 등 EU의 법률적·제도적 개혁문제, EU확대, 유로통화동맹(EMU), EU 건설에 필요한 기본원칙 정의, EU의 장기적 재무구조의 규모와 형태, EU집행위원장 및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주요 인사문제 결정

※ 유럽이사회(정상회의)와 각료이사회와의 관계

-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정상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사회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
- 단, 정상회의 의제 대다수가 이사회 합의 거처 유럽이사회 형식적 승인만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엄격한 상하관계는 아님
- 리스본조약은 EU 정상회의를 EU의 공식기관으로 편입하고, 기존의 순환국외장 대신 상임의장이 대표토록 하고 있으며, 각료이사회는 기존의 역할과 구조상 큰 변화가 없음.

라.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 성격

-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통합의 중심기구

(2) 구성 및 조직

- 리스본조약은 2014년 이후 집행위원수를 회원국 수의 2/3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8.12월 정상회의는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 '1국 1집행위원'의 유지 결정
 - EU 확대 이전 15개 회원국 당시에는 20명으로 구성(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각각 2명씩 지명)
- 집행위원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지명(nomination)되고, 유럽의회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 집행위 전체(whole body)에 대한 승인(consent) 여부를 결정한 뒤 EU 정상회의의 가중다수결로 최종 임명
 - 집행위원간 임무부여는 집행위원장의 주도하에 정치적 균형과 회원국간 협상에 기초하여 결정
- 집행위원장은 다른 EU 기구 및 대외적으로 EU 집행위를 대표하며, 집행위의 행정서비스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현 집행위원장 : 포르투갈 총리 출신 Jose

Manuel Barroso)

- 다만,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신설로 인해 대외적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

〈 EU집행위원 및 임무(2010.2~2014.10) 〉

성명	출신국	임무
Jose Manuel Durao Barroso	포르투갈	집행위원장
Catherine Ashton(여)	영국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부위원장)
Viviane Reding(여)	룩셈부르크	사법, 기본권, 시민권
Joaquin Almunia	스페인	경쟁
Siim Kallas	에스토니아	운송
Neelie Kroes(여)	네덜란드	디지털 정책
Antonio Tajani	이탈리아	산업 및 기업
Maros Sefcovic	슬로바키아	기관간 관계 및 행정
Johannes Hahn	오스트리아	지역정책
Karel De Gucht	벨기에	통상
Kristalina Georgieva(여)	불가리아	국제협력, 인도적 원조 및 위기대응
Androulla Vassiliou(여)	사이프러스	교육, 문화, 다언어주의 및 청소년
Stefan Fule	체코	확대 및 인근국정책
Connie Hedegaard(여)	덴마크	기후변화 대응
Olli Rehn	핀란드	경제 및 금융문제
Michel Barnier	프랑스	내부시장 및 서비스
Gunther H. Oettinger	독일	에너지
Maria Damanaki(여)	그리스	해양문제 및 어업
Laszlo Ando	헝가리	고용, 사회문제 및 포용
Maire Geoghegan Quinn(여)	아일랜드	연구 및 혁신
Andris Piebalgs	라트비아	개발
Algirdas Semeta	리투아니아	조세 및 관세동맹, 회계, 반부패
John Dalli	몰타	보건 및 소비자 정책
Janusz Lewandowski	폴란드	예산 및 재정프로그램
Dacian Ciolos	루마니아	농업 및 농촌개발
Janez Potocnik	슬로베니아	환경
Cecilia Malmstrom(여)	스웨덴	내무

(3) 책임 및 권한

- 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
 - EU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 행정기능
 - EU 조약과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법규(directive, regulation, decision)을 제정
 - EU의 재정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 관리·운영)
 - 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 EU 법률의 수호 역할
 - EU 법안들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 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 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 신설시 대외적 대표기능은 어느정도 축소될 전망
-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 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마.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1) 연혁 및 성격

- 52.9월 ECSC의 총회(Assembly)형식으로 처음 스트라스부르에 설치, 58년 EEC 총회와 EURATOM 총회와 통합되었고 62.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로 개칭
- 79.6월 최초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9.6월 1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을 채택
- 2009.6.4~7간 27개 회원국에서 비례대표 방식으로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리스본조약의 미발효로 기존 니스조약의 규정에 따라 736명의 의원 선출
 - ※ 리스본조약은 의원정수를 751명으로 규정
- 유럽의회는 처음 등장 당시 EU 주요 기구 중 가장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직접선거 제도 도입 및 수차례에 걸친 조약개정을 통해 감독·통제기능, 입법, 예산안 작성 등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리스본조약은 공동결정절차 적용 분야를 대폭 확대, 입법·예산 과정에서의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전망

(2) 구성 및 조직

- 현재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총 7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 할당
 - 국가별 의석수는 독일이 최다로 99명, 몰타가 최소로 5명

〈 유럽의회 국별 의석수 〉

(2009.6월 실시 유럽의회 선거 이후)

국 가	의석수
독일	99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2
스페인, 폴란드	50
루마니아	33
네덜란드	25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22
스웨덴	18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17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13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12
라트비아	8
슬로베니아	7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6
몰타	5
계	736

- 범국가적 연맹인 정치그룹(political group)들이 일종의 정당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7개의 정치그룹들이 활동하면서 좌·우파를 비롯한 유럽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반영(국민당그룹, 사회당그룹, 자유당그룹 등)

〈 정치그룹별 정치성향 및 의석분포 〉

(2009.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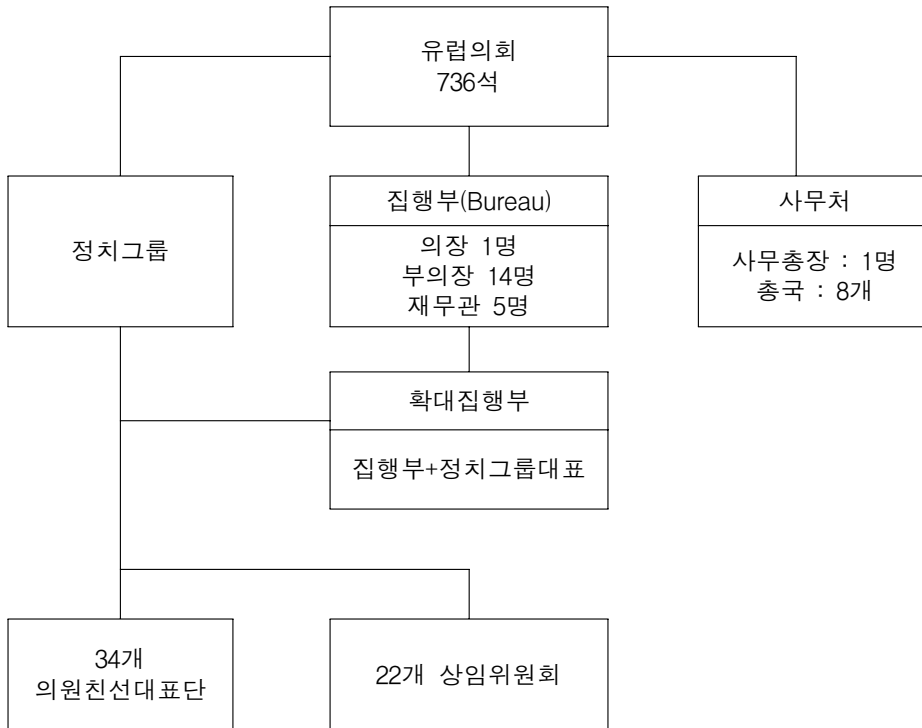
명 칭	정 당	의석수
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 EPP)	독일 기민당, 프랑스 대중민주연합(UMP), 이탈리아 자유국민당(People of Freedom) 등이 주축이 된 중도우파	265
사회당그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 S&D)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등이 주축이 된 중도좌파	184
자유당그룹(European Liberal, Democrat and Reform Party : ALDE)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그룹	85

명 칭	정 당	의석수
녹색당 및 자유동맹그룹(Greens and European Free Alliance Group : Greens/EFA)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녹색당그룹	55
유럽보수 개혁 그룹(European Conservative and Reformist : ECR)	영국 보수당, 체코 시민민주당 등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정당그룹	54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연합(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 EUL/NGL)	프랑스 공산당, 독일 민사당, 그리스 좌파연합, 스웨덴 좌파당 등 연합그룹	35
자유민주그룹(Europe of Freedom and Democracy : EFD)	영국 독립당, 덴마크 EU 반대그룹 등으로 구성	31
무소속(Non-inscrits : NI)	무소속	27
계		736

※ 정치그룹 구성요건 : 최소 1/4 이상 회원국(현재 6개국)의 25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

- 유럽의회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Quaestors, 의회행정 담당)으로 구성되는 임기 2년 반의 집행부(Bureau)와 각 정치그룹의 대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Conference of Presidents)로 구성
 - 현 의장(2009.7월 선출) : Jerzy Buzek(폴란드, 국민당그룹)
- 유럽의회는 외교, 경제·금융문제, 농업, 개발, 예산 등 2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필요시 특정사안에 관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 설치 가능하고, 비회원국(유럽 및 비유럽) 의회와 교류를 위한 34개의 의원친선 대표단(delegation)이 존재
 -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EP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 총 28명으로 구성(부회장 2명, 정회원 14명, 부회원 11명)
- 회장 : Christian Ehler(독일, 국민당그룹)

〈 유럽의회 구조 〉



(3) 소재지 및 운영

- 1년에 12회 개최되는 총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4~6회의 미니(mini) 총회와 각종 위원회는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 (multi-site 시스템)
 - 기타 EU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에 의해 대다수의 정치그룹 인사들은 브뤼셀에 상주
 - ※ 독·불간 화해리는 역사적 상징성으로 인해 독·불 접경지역인 스트라스부르에 본부가 소재
 - 의회 기관의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안이 제기되기도 하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4) 기능 및 권한

(가) 입법적 권한

- 유럽의회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co-decision)’을 보유
 -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공동결정절차 적용분야가 농업, 수산업, 공동통상정책, 구조조정기금, 교통, 자유, 안전, 사법분야가 신규 포함되는 등 기존 43개 분야에서 90개로 대폭 확대
 - ※ 외교·안보 및 일부 내무사법 분야는 여전히 이사회 권한이며, 유럽의회는 협의 및 권고 역할
- 유럽의회 권한은 1987년 단일의정서(SEA),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 2003년 니스조약을 거치며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9년 리스본조약 발효를 계기로 이사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 행사

(나) 감독 통제권

-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motion of censure) 보유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 전체를 불신임 가능
 - ※ 의회는 집행위 압박 수단으로 불신임권 사용을 수차 언급한 바 있으나, 1999년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앞서 Jacques Santer 위원장 및 집행위원 전원이 사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불신임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 집행위 및 이사회를 상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 가능하고,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 의장각료가 참석하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정상회의 개최 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
- 집행위는 매년 활동계획, 활동결과 보고서, 예산안 집행기록을 의회에 제출

- 의회 상임위는 해당 집행위의 활동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할 수 있으나, 조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조사권 행사 사례는 매우 희소
- EU 법 시행상의 부실행정이나 위반행위에 대해 EU 옴부즈맨을 통해 조사 실시

(다) 예산권

- 예산분야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EU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

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 법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1952년 설치) 등 3개 법원으로 구성(룩셈부르크 소재)
 - 하급심 기관은 EU 경쟁, 반덤핑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General Court, 1988년 설치) 및 EU 기관과 그 직원간 법적 분쟁 사건을 다루는 행정법원(Civil Service Tribunal, 2004년 설치)으로 구성
- 최상급심인 Court of Justice는 각 회원국이 지명하는 27명의 법관(judge)과 개별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법관에게 제출하는 8명의 법무관(Advocate General)으로 구성
 - 사법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의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 선출되고, 법관과 법무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최종 임명

사.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 1975년 체결된 제2차 예산조약에 따라 EURATOM, EEC, ECSC 각 기구의 회계조직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여 공동체 전반의 일반예산에 대한 외부감독을 위해 설립(룩셈부르크 소재)
- 회원국 수에 따라 2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임기 6년), 유럽의회의 청문회 등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지명
- EU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 및 EU 하부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을 심사하며, EU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안(주로 재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시)에 관한 검토 결과나 견해 제공

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1) 기 능

- ECB는 1999년 EMU 출범으로 형성된 유로지역에서 단일통화정책을 수행 (프랑크푸르트 소재)
 - EU조약은 ECB의 최우선목표를 “물가안정의 유지”로 규정
 - 유로시스템(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기본과제 : 유로지역 통화정책의 정의 및 시행, 외환업무 수행, 회원국 공적 외환보유액의 보유 및 관리,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촉진
- ECB는 유로지역에서 독점적인 은행권 발행 권한을 보유

(2)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 ECB는 정책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두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단일통화정책을 수립 및 집행

- 정책이사회 : 유로시스템의 기본과제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채택 및 통화정책 수립
 - 총재, 부총재, 4명의 이사 및 EMU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2명으로 구성
- 집행위원회 : 정책이사회의 통화정책 지침 및 결정에 부합되는 사항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로지역 중앙은행에 대해 필요사항을 지시
 - 총재, 부총재 및 4명의 이사로 구성

(3) 통화정책의 목표·전략·운용체계

- 목표 : 최우선목표는 물가안정
 - 물가안정은 구체적으로 “유로지역 종합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 2% 이내”로 정의
- 전략 : 단기금리의 적정 수준 결정에 필요한 포괄적인 틀 확보
 - 통화량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보 추출을 위해 통화분석 및 경제분석을 병행하여 수행
- 운용체계 : 단기금리의 적정 수준 달성 수단 및 절차 규정
 -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관리함으로써 금리 수준을 조절

(4) 여타 경제정책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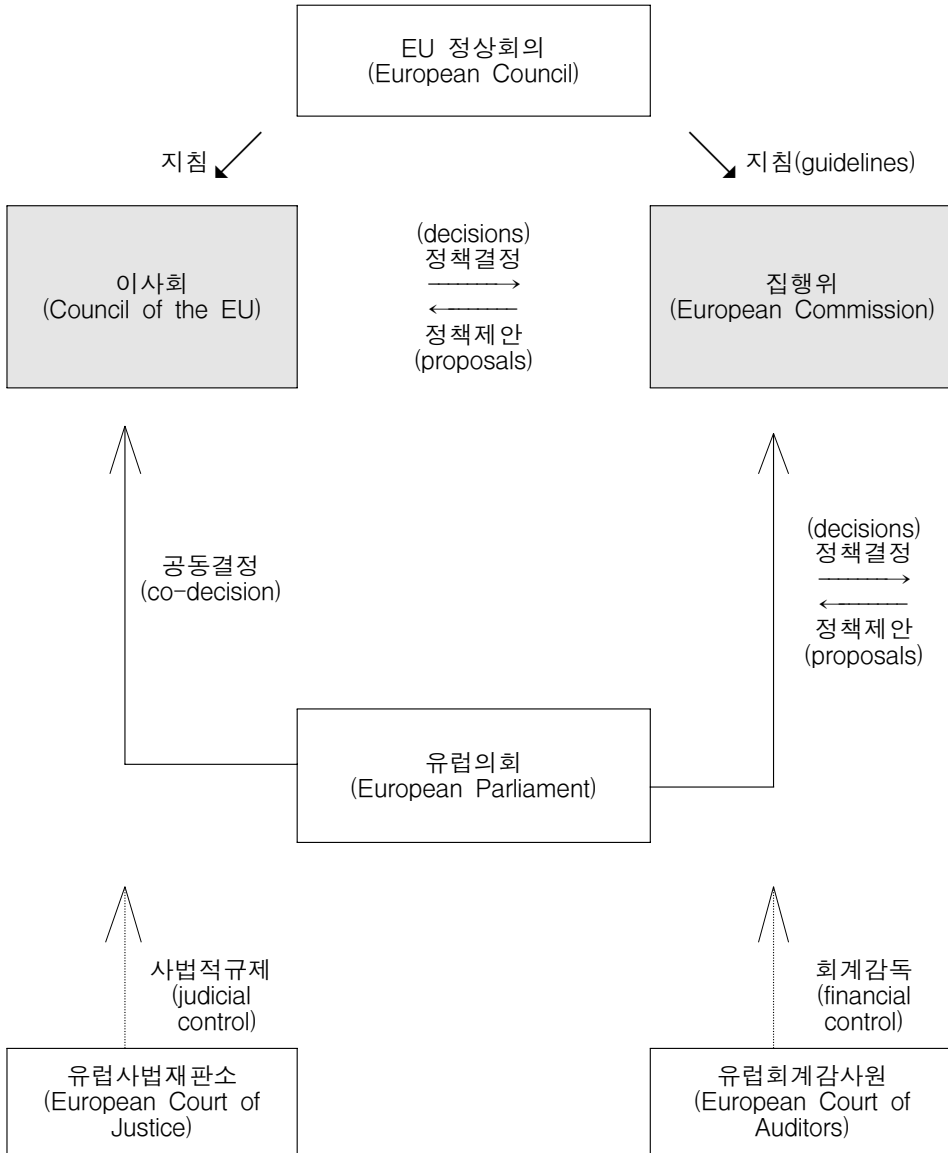
- 외환정책 : 주요 정책사항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
 - 물가안정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의 운용에 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은 ECB에 부여
- 금융감독 : 회원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수행
 - ECB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조언 및 협의 기능을 보유
- 재정정책 : 회원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

- EC조약은 ECB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을 금지

〈 주요 EU 기구 비교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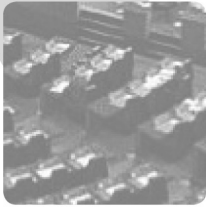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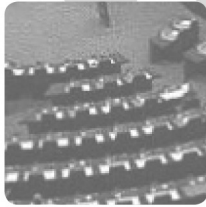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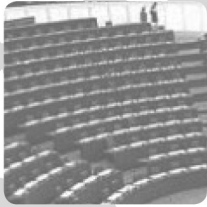
기구명	소재지	구성	기능
이사회 (EU 정상회의 및 각료이사회)	브뤼셀	27개국 정상 및 각료,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집행위원장	- EU 최고 입법 및 주요 정책 결정기구
집행위원회	브뤼셀	27명 집행위원 (각국 1명, 임기 5년)	- 집행기관 - EU 법안 제안권 - 공동체 이익 대변
유럽의회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룩셈부르크	736명(직접선거 : 임기 5년) -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 출신국이 아닌 정치노선에 따라 정치그룹 구성	- 입법·예산 및 감독기관 · 신규회원국 가입 등 주요사항 동의권, 법안 공동결정권 · 예산 확정권 ·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 임명 동의 및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
유럽사법재판소	룩셈부르크	27명 법관 (각국 1명, 임기 6년)	- EU 법규 해석권 - EU 조치의 적법여부 판결권
유럽회계감사원	룩셈부르크	27명 감사위원 (각국 1명, 임기 6년)	- EU 회계감사 - 유럽의회의 재정적 성격의 법안입법시 의견 제출

〈 EU 주요기구의 구조 및 상호관계 〉



IV

EU 최근 동향



1 리스본조약 발효

가. 헌법조약 채택 및 비준 무산

-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정치통합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EU의 효율성 및 민주성 제고, EU 기관과 회원국간 권한배분 문제, 기존 조약체계의 정비를 위해 헌법적 내용의 조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2002.2월 발족한 EU 장래문제협의회(Convention on Future of Europe)가 헌법조약 초안을 2003.7월 제안
- 2003.10월부터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를 진행하여 2004.6월 EU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 2004.10.29 로마에서 헌법조약 서명
- 당초 2006.11.1 발효를 목표로 각 회원국 국내비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05년 프랑스(5.29)와 네덜란드(6.1) 국민투표에서 헌법조약 비준이 부결

나. 개혁조약(일명 Lisbon Treaty) 발효

- 2007.6월 EU 정상회의는 헌법조약안 대신 기존 EU 조약들을 개정하는 형식의 개혁조약(리스본 조약)을 추진기로 합의
 - 2007.12월 정상회의에서 개혁조약안에 서명하고, 회원국별 비준절차를 진행
- 회원국들은 지난 2005년 헌법조약의 비준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의회절차를 통한 비준을 추진하는 등 동 조약의 비준 성공을 위해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헌법규정상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08.6.12)한 아일랜드에서 부결
 - 리스본조약 내용보다는 EU 통합에 대한 정치지도층과 일반시민간 인식의 차이, 아일랜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 여러 국내외 정치요인이 겹쳐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

- EU 정상들은 아일랜드에 대한 국방·조세 분야에서의 중립성, 1국 1집행위원제 등에 관해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으며, 리스본조약은 아일랜드에서 2009.10월 제2차 국민투표 통과, 2009.11월 체코 Klaus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2009.12.1 발효

2 EU 확대

가. EU 가입기준 및 절차

(1) 가입기준

-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49조 : 모든 유럽국가는 EU 가입 신청 가능
 - 희망국이 가입신청을 EU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집행위와 협의,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입 여부 결정
- 코펜하겐 EU 정상회의(93.6월)에서 아래 EU 가입 3가지의 정치·경제적 기준 (Copenhagen Criteria) 결정
 -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소수민족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
 - 시장경제 체제 유지 및 EU 경제와의 조화 능력
 -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준수능력 보유

(2)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가 제출되면 집행위는 가입협상 개시 여부에 관한 집행위 검토의견서 (opinion)를 작성, 이사회에 송부하고 이사회가 가입 협상 개시여부 결정

- 가입신청국-회원국 정부간 협상(intergovernmental accession conference)은 EU 가입신청국과 27개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며, 가입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입조약(Accession Treaty) 체결
- 가입조약은 EU 회원국 및 가입국 의회의 비준과 유럽의회의 승인(approval)을 얻어 발효

나. 제5차 및 제6차 확대(04.5월, 07.1월)

- 2004.5.1 중동구 10개국이 EU에 가입함으로써 EU는 25개 회원국, 인구 4.6억명, GDP 10조달러, 교역액 2.4조달러의 세계최대 단일 경제공동체로 등장
 - 냉전체제의 유산인 동·서유럽 분단을 평화적으로 통일, 유럽의 안정 및 번영을 더욱 공고화, EU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등의 효과 달성
- 2007.1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가입으로 제5차 확대과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로써 EU는 27개 회원국, 인구 5억명의 공동체로 확대

다. 현재 진행중인 가입 협상

- EU는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ies)과 잠재 가입후보국(potential candidate countries)으로 분류
 - 가입후보국 :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 잠재 가입후보국 :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
- EU는 2003.6월 Thessaloniki 정상회의시 ‘서부 발칸 국가들의 장래는 EU내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부 발칸 국가들을 EU 가입의 우선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EU 가입협상을 통한 개혁, 민주화, 경제발전을 유도
- EU는 가입 협상 전단계로 ‘안정과 제휴 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SAP)’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개혁 성과 달성시 ‘안정과 제휴 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SAA)’을 체결

- 터키는 2005.10월부터 가입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프랑스, 독일 등의 터키 가입에 대한 기본적 반감과 터키의 사이프러스에 대한 항구 및 공항 개방 거부로 가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
- 크로아티아는 2012년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경 경계 획정 문제로 분쟁중인 슬로베니아와의 중재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2010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
- 마케도니아는 2005.12월 공식적으로 가입 후보국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가입협상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으며, 인접국인 그리스와의 국명문제 분쟁으로 가입협상 진전에 어려움
- 잠재 가입 후보국 중 몬테네그로가 2008.12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알바니아(09.4) 및 세르비아(09.12)도 가입 신청서를 정식 제출

라. 수용능력(absorption capacity)에 관한 논의

- 2004.5월 중동구 10개국의 EU 가입 이후 EU내에서는 구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 회원국으로부터의 저임금 노동자 유입에 따른 실업 우려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확대는 EU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2006.12월 EU 정상회의는 서부 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지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EU 확대의 속도는 EU의 통합 능력(integration capacity)을 감안 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

3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가. 추진배경

- 유럽통합은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경제통합 진전에 따라 자연히 외교·안보 등 정치통합의 필요성 제기
- EU는 1970년 이래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이라는 기구화되지 않은 형태의 정치협조 절차를 유지
- 냉전종식 및 독일 통일 등 안보환경 변화와 1990년대 발칸지역 분쟁의 경험은 유럽인들이 외교·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 마련
 - 마스트리히트조약(1992)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유럽연합의 제2주(2nd pillar)로 설정
- 리스본조약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창설 등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 통합을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향후 EU의 대외적 대표성 및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공동외교안보정책 구체화 과정

- 마스트리히트조약(1992) : CFSP 추진 명문화
 - EU 외교, 국방장관회의 틀내에서 상호 정보공유 및 협의 규정
- 암스테르담조약(1997) : CFSP 조직 및 운영방향 설정
 - CFSP 전담 고위대표직 설치
 - CFSP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ESDP) 개발 규정(독자적인 방위능력 개발 필요성의 기초 제공)

- 생 말로 영·불 정상회담(1998) : 독자적인 군사능력 추진 합의
 - 실질적인 군사능력을 갖춘 영·불이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능력 추진 합의(독자적인 방위정책에 소극적이던 영국의 태도 변화)
- 헬싱키 정상회의(1999) : ESDP의 구체적 목표 설정
 - ESDP의 목표 : Petersberg 임무 수행(인도적 구조, 평화유지, 평화구축 및 위기관리)을 위하여 NATO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군사활동 개시 결정 및 이행
 - 5~6만의 신속대응군 창설 목표 수립(필요시 회원국 군대로 구성되며, 상비군 개념이 아님)
 - EU 이사회에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및 군사참모부 설치
- 브뤼셀 정상회의(2003) :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 ESS) 채택
 - 테러, WMD 확산, 지역분쟁, 실패국가 등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인식
 - EU가 필요시 조기에 개입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EU 안보방위 능력 제고, 대서양 양안관계 강화 등 규정
- 브뤼셀 정상회의(2004) : 2010년까지의 EU 방위력 제고 목표 설정
 - EU의 방위분야 공동대응 능력 향상과 방위력 강화를 위해 유럽방위청 및 신속대응 전투부대 등을 골자로 한 'Headline Goal 2010' 채택
- 브뤼셀 정상회의(2008) : 공동안보방위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패키지 채택
 - NAT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ESDP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승인
- 리스본조약 발효(2009) :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출범
 - 연대조항(solidarity clause), 상호방위조항(mutual defence clause), 상설협력체계(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등 안보방위분야의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다.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 조직 및 운영

- EU 정상회의
 - CFSP의 방향 및 지침 수립
 - 이사회내 CFSP 고위급 및 실무협의체 : 상주대표회의(COREPER), 정치안보 위원회(PSC), 아주국장회의(COASI), 비확산위원회(CONOP) 등
 - 리스본조약은 순환의장국 대신에 정상급 수준에서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직 신설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HR/VP)
 -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지원을 받아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이행하고,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고위대표직 신설
-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 FAC)
 - EU 정상회의가 정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CFSP 이행을 위한 구체적 결정
 - 매달 개최되며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주재
-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 리스본조약 발효 1주년인 2010.12.1 출범 예정이며 ① 집행위와 이사회로 부터 독립 ② 집행위, 이사회의 대외관계 담당인력과 회원국 파견 외교관으로 구성(약 5천~7천명선) ③ 지역 및 기능국을 설치, 독자적 정책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CFSP 관련 주요정책을 입안,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제안(proposal) 형태로 제출

라.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SDP) : Headline Goal 2010 (2010년까지의 EU 방위능력 제고 목표)

(1) 배 경

- ① EU 공동방위정책 진전
 - EU의 방위정책 통합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전
 - 테러, WMD 확산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과 발칸,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에서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해서는 유럽의 공동 대응 능력이 필요한 상황
 -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 확대 추구
- ② Helsinki Headline Goal 시행 결과 평가
 - 1999년 Helsinki EU 정상회의에서 Petersberg 임무수행을 위해 EU 신속 대응군 6만명 창설을 골자로 하는 2003년까지의 EU 군사능력 강화 목표 수립
 - 신속대응군은 상비군이 아니고 유사시 동원가능토록 문서상 체계만 만들어 놓은 상태
 - Helsinki Headline Goal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EU 군사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2004.6월 정상회의(브뤼셀)에서 Headline Goal 2010 수립

(2) Headline Goal 2010 주요내용

- ①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 창설
 - 2004.7월 창설
 - 덴마크를 제외한 EU 24개 회원국 참여
 - 브뤼셀 소재

- EU 고위대표, 회원국 국방장관, 집행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중다수결로 의사결정
 - 방위비 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정 역할을 수행 (무기구매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갖는 것이 아님)
 - 군비협력(armament cooperation), 연구·개발 촉진, EU 방위산업 발전 촉진, EU 방위능력 제고 등의 임무 수행
 - 예산은 참여 회원국의 총국민소득에 기초하여 기여
 - 정규 예산과는 별도로 연구기금 조성 및 특별사업에 대해 수시 예산 수립 가능
 - 역내 방위시장 개방, 수송능력 제고 등 EU 방위력 향상 방안 강구, 방위산업 관련 연구 증진 등을 위한 활동 수행
- ② Battlegroup(신속대응 전투부대)
- EU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동시에 다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제고
 - UN 결의 이행을 위해 주로 아프리카, 발칸지역 분쟁 개입을 상정

마.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SDP) 역량강화 방안(2008)

- 2008.12월 EU정상회의는 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ESDP)을 NAT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틀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의장국 프랑스 측이 제시한 패키지(안)을 승인
- ① EU의 공동안보방위 능력 제고
- EU는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EU가

‘역외지역’에서 일련의 ‘민간 임무단/군사작전’을 ‘동시에’ 전개·수행하기 위한 역량 제고

- 60일 이내에 인도적 지원, 재건, 신속대응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6만명 규모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목표로 추진
- 회원국내 군수물자 이전 및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지침 조기 마련 및 군수산업 활성화 노력
- 군인사 교류를 위한 회원국 초급장교 합동 연수 훈련 프로그램 실시
- UN 및 AU 등 지역안보 기구와의 협력 강화
- NATO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EU-NATO간의 전략적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비공식 고위협의 그룹 설치 지지)

② 유럽안보전략 이행 보고서 채택

- 2003년 채택된 바 있는 유럽안보전략(European Security Strategy)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 2003년 이후 유럽안보전략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지적
- 향후 안보전략의 중점 과제로서 ▲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으로부터의 민간인 보호 ▲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 존중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다자협력 강화(UN에 적극 협조, EU-NATO간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 등)를 설정

③ 국제안보강화에 관한 선언 채택

- 국제평화와 안보증진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
- 대테러, WMD, 조직범죄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해 EU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천명

바. 리스본조약 발효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강화

-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출범
 - CSDP 작전범위가 기존의 Petersberg 임무(인도적 임무, 평화 유지 및 위기관리)에서 「공동무장해제 작전(Joint disarmament operation), 군사적 조언제공 및 지원, 테러 대처」등으로 확대
 - 현재까지 서부발칸,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ATALANTA, EUTM Somalia) 등의 지역에 총 23개 CSDP 임무단을 파견
- 연대 및 상호 방위조항 신설
 - 연대(Solidarity) : 회원국이 자연재해 및 테러공격을 당했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방법을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지원
 - 상호방위(Mutual Defence Clause) : 회원국이 무장공격의 피해자가 될 경우 여타 회원국들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 상설협력체제(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도입
 - 안보방위분야의 협력 심화를 희망하는 국가들간의 협력 확대 여지를 부여

4 내무사법 협력

가. 개요

- 내무사법 협력은 EU 회원국 국민이 역내 어디에서나 동일한 자유와 안전, 정당한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 내무·사법 당국간 공조를 통해 EU를 “자유·안전·정의의 공동지대(commo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U 공동정책 분야
- 동 분야(JHA)는 국내질서의 수호, 자국과 외국 영토의 구분, 자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등 전통적으로 주권 국가의 고유영역에 속해 있던 분야로서,

개별국가만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에서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차원의 문제해결을 모색

나. 연 혁

- 57년 로마조약에서 사람의 자유이동을 규정한 이래, 풍피두 그룹(1972) 및 트레비 그룹(1975) 등의 창설을 통해 마약 및 테러 문제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
- 80년 후반 독일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독일로의 외부인구 대거 유입, 인종테러 빈발, 망명자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국경·치안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독일이 내무·사법분야에서 EU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 국경간 거래 증가로 80년대 후반 이후 국경통제 폐지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서유럽 10개국(2009년 현재 25개국)간 상호 국경개방을 위한 쉥겐협정(1985) 및 쉥겐이행협정(1990)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 이동의 확대 및 EU 외부권 국경관리에 관한 공동대응 필요성 대두
- 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제3의 지주(third pillar)로 포함하여, EU시민의 기본권, 개인 자유이동, 망명·이민, 비자정책, 마약·인신매매, EU외부 국경관리, 경찰·사법당국간 협력 등을 포괄
- 내무사법분야의 마스트리히트조약 내용의 이행이 더디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강화된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97년 암스테르담조약을 통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창설을 명시하고 협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
 - 회원국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국경 범죄, 민사는 물론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협력 확대
- 99년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핀란드 탐페레에서 특별 EU정상회의를 갖고 향후 5년간(1999~2004)의

구체 정책이행 과제(Tampere Program)를 제시함으로써 동 분야를 EU의 정치적 우선순위로 승격

- 2004.11월 EU 정상회의에서 그간 Tampere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성과와 EU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과제를 재정리하여 2005~2010년간의 정책지침(Hague Program)을 채택
- 2009.12.1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3주체제를 폐기하는 대신 내무사법을 공동체 영역으로 편입하고 여권 및 신분증, 가족법, 경찰 작전 협력(operational police cooperation), 유럽공안검사기구(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신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가중다수결(QMV) 제도 및 공동 결정절차(co-decision)에 의해 의사결정
- 2009.12월 EU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2010~2014) 내무사법분야의 중점 협력 목표로 EU의 시민권 강화 및 기본적 권리 증진, 공동 이민 및 망명정책 수립, 안전한 유럽 건설 등 6개항을 제시하는 스톡홀름 프로그램(Stockholm Program) 채택

다. 최근 동향

- 현재 동 분야 최대 현안은 불법이민 문제로, 특히 아프리카 북부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으로의 해상을 통한 밀입국 차단을 위해 관련 회원국의 해안경비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대규모 불법이민으로 국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을 위해 EU 국경관리청(Frontex)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
- 2004년 스페인 열차 테러 및 2005년 런던 테러 사건 이후 EU의 반테러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는 바, 테러자금(돈세탁) 차단, 정보통신 기록 확보, 외국계 청년층의 급진화 방지를 위한 사회동화 정책을 강화
- 사법협력 관련, 종래의 추방제도 대신 2004년도부터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 제도가 도입되어 타회원국으로 도주한 범죄피의자의 송환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유럽증거영장제도 (European Evidence Warrant) 도입

- EU 이사회는 2008.4월 유럽경찰청(Europol)을 EU 기관으로 편제하는데 합의하고, Europol 설립 협정 개정을 거쳐 Europol은 2010년부터 EU의 예산지원을 받는 EU 공식 기관으로 편입
 - Europol의 임무는 테러, 조직범죄, 마약밀매, 불법이민, 돈세탁·위조,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는 범죄 등으로 확대될 전망

라. Stockholm Program 및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 (대테러 대책 강화) 2010년중 항공여객정보 접근 강화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미국과의 금융정보제공협정 협상을 마무리하되, 금융정보제공협정에는 제공된 정보가 대테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 용도를 제한하고 제공된 정보의 보존기간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 강구도 포함
- (범죄 대처) 2010년중으로 information system 침해 범죄에 관한 지침 마련, 2012년 내로 명의도용 범죄 관련 법안 제출, 2010년 중으로 법집행 및 시민보호에 관한 협력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치안 전략 수립
- (이민 및 국경관리) 2010년 중으로 계절적 취업 및 업무상 여타회원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제3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조건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제출, 2011년 중으로 입국 비자소지 제3국인의 입출국시기와 체류기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출국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EU로 입국하는 미성년자 대처 문제와 유럽공동망명체제에 대한 정책안 마련
- (EU 시민 보호 강화) EU 회원국 국민들간 결혼, 사업 등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중으로 회원국 민법의 상호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여성폭력피해자,

형사피의자 처우에 대한 공동기준 마련, 아울러 2011년중으로 비EU지역을 여행하는 EU 시민에 대한 영사보호 강화 법안 제출

5 EU 경제동향

- EU경제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9년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2009년 3/4분기 이후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
 - EU 27개국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009년 2/4분기 $\Delta 0.3\%$ → 2010년 2/4분기 1.0%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009년 2/4분기 $\Delta 0.1\%$ → 2010년 2/4분기 1.0%
- 그러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EU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금번 경기침체가 금융부실과 자산가격 하락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대출 및 민간소비 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
- 한편, 소비자물가는 2008년중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9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09년중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플러스 전환
 - EU 27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 2010년 1/4분기 1.9% → 2010년 2/4분기 1.8%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 2010년 1/4분기 1.4% → 2010년 2/4분기 1.4%

6 공동통상정책(리스본조약 이후)

가. 목표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206조는 조화로운 교역 발전, 교역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조치의 점진적 철폐와 관세 및 여타 교역장벽의 감축을 목표로 규정

나. EU 배타적 관할권의 확대(Article 207, TFEU)

- 2009.12.1 리스본조약 발효로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배타적 관할권이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로 확대
 - ※ CCP의 관할권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이래 교역여건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확대
- CCP 관할권 확대는 역내시장(internal market) 통합의 심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
- 통상정책의 거의 모든 분야가 EU의 배타적 관할권에 포함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향후 EU가 서비스 교역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을 제3국과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FTA를 포함하여 EU가 체결하는 통상협정이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CCP의 배타적 관할권 확대가 혼합협정(mixed agreement) 체결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해외직접투자가 EU의 배타적 관할권에 포함됨에 따라 회원국들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의 미래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전망
 - portfolio investment와 투자보호(post-establishment investment protection)

등이 해외직접투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문제가 이미 체결된 BITs의 미래와 관련하여 제기될 것으로 예상

다. EU 관할권의 한계(limits of EU competences)

- 통상정책에 대한 EU의 관할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니스조약의 내용과 동일
 - 회원국과 유럽연합간의 관할권 구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EU 조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령 혹은 규정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해서는 안됨.
 - 이는 통상정책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통해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EU 조약상의 제한을 우회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교통분야 국제협정 협상 및 체결은 공동교통정책(common transport policy)의 규정에 따름.

라.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적용

- 공동통상정책의 Framework를 규정하는 법령이 공동결정절차를 거쳐 제정 되게 됨에 따라 유럽의회가 규정제정에 있어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
 - 이사회와 의회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바, 조정위원회에서 문안 합의에 성공 하더라도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안은 폐기됨.
 - ※ 리스본조약 이전에는 유럽의회 참여 없이(필요시 유럽의회와 협의)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가중다수결로 규정을 제정함.

마. 국제통상협정 협상 및 체결

- 국제통상협정 협상 및 체결절차는 TFEU 제2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름.
 - 집행위의 권고(recommendations)에 따라 이사회가 협상 개시를 승인 (authorize) → 집행위는 이사회가 임명한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상을 진행
- 리스본조약에 따라 집행위는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도 협상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 니스조약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협상자(통상정책의 경우 집행위)의 권고에 기초하여 정식서명 및 잠정적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
 - 이사회는 통상분야 협정 체결 관련 결정(협상개시, 타결, 서명, 잠정적용 등)은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에 의함.
 - QMV에 대한 예외(만장일치) :
 - ① 이행법령 채택에 만장일치를 요하는 규정을 포함한 협정 ②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문화, 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정 ③ 사회, 교육, 보건 서비스 분야 협정중 동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조직을 방해(disturb)하거나 책임을 침해(prejudice)하는 협정
- 리스본조약에 따라 공동결정이 적용되는 협정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가 필요

※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협정

- association agreement (유럽연합과 제3국간의 협력의 기본틀/framework)을 규정하는 협정
- EU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에의 가입
- 특정 제도적 틀 설립에 관한 협정
- 중요한 예산상의 함의가 있는 협정
- 공동결정절차가 적용되는 분야의 협정

바. 통상정책의 정치화(politicization)

- 리스본조약은 대외정책(external policies)에 대한 조정을 통해 공동통상정책, 개발협력, 제3국과의 경제·금융·기술협력 분야를 TFEU의 PART 5 아래 통합하여 기술
 - TEU(Treaty of the European Union) 제21조는 유럽연합의 공동통상 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수립, 이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기술
- 공동통상정책도 유럽연합 대외정책의 원칙과 목표의 틀 내에서 수립, 이행 되어야 함.
 - 이러한 원칙과 목표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함

사. 유럽연합의 Regional Trade Agreements 체결 동향

- 현재 24개 국가 또는 지역 국가연합체와 RTA를 체결함.
 - 발효절차 진행중인 협정 : 8개, 협상중인 협정 : 11개
- 이들 RTA는 아래 4개 카테고리 분류해 볼 수 있음.
 - 관세동맹협정 : 인접 미소국가 대상(산마리노, 안도라 등)
 - 안정제휴협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가 대상(크로아티아 등)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개발지향 지역협력 협정(Cariforum 국가 등)
 - 자유무역협정(FTA) : 시장접근 확대를 주목적으로 추진
- 유럽연합은 2006~2007년에 걸쳐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인도, 중국, 한국, 러시아, 아세안, GCC 등)과의 FTA를 추진키로 결정함.
 - 집행위는 FTA가 WTO 다자통상협상 타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
 - 동 FTA 협상 범위는 투자, 공공조달, 경쟁, 규범, 지속가능개발, IPR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

아. 수출입 환경

- EU는 무역 자유화의 선두 주자로 시장 접근 장벽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일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 개선의 여지는 있음.
- MFN 실행 관세율은 6.7%로 세율 자체는 낮은 편이나, 농산품의 경우 0~604.3%(평균 9.3%)의 복잡한 관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 국가에 대해 FTA 또는 GSP 세율이 적용되어 국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MFN 관세 적용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등 9개국에 불과
- 통관절차, 내국세, 세제, 기술적 절차 및 기술표준 등의 회원국간 조화가 미진한 분야도 단일시장 분열(fragment) 효과를 야기하여 실질적 시장 장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나, 최근 서비스 부문에서의 통합 진전으로 이러한 장벽은 부문별로 빠르게 감소되는 추세
- EU는 개방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미국 등과 더불어 무역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한 항방에 기업의 관심이 집중

7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가. EU 농업 일반현황(EU 27개국 기준)

- 토질이 비옥한 중부유럽지역과 척박한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지방 등 다양한 여건의 농토에서 열대 과일류부터 한대지역 농산물까지 생산
 - 경지면적 : 총 182백만ha, 농업생산액 : 3,558억유로
- 북유럽(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등)은 대농,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 소농이며, 중동부유럽(프랑스, 독일, 신규가입국)은 대소농 혼합형태
- 총농가호수 : 13,700천호(이탈리아 1,679, 스페인 1,044, 프랑스 527)
 - * 농업부문의 고용비율 : 5.6%(독일 2.2%, 프랑스 3.4%, 스페인 4.5%)
 - 호당 경지면적 : 13.3ha
 - 덴마크 60.4ha, 프랑스 55.8ha, 벨기에 28.5ha, 이탈리아 8.6ha
 - 전체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정치적·사회적 중요성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
 - GDP중 농업비중 1.2%(프랑스 1.5%, 영국 0.4% 등)
 - EU 전체예산에서 공동농업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2009년 기준 약 550억유로)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농가직접지불, 농산물 시장관리, 농촌개발사업 등
 - 농업예산 팽창 억제에 위해 88년부터 농업예산 한도액 설정

나. CAP 개혁의 흐름과 최근 논의동향

(1) CAP의 기본체계

-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공공수매, 수입관세, 수출보조)
 - 주요품목별 역내 목표가격을 설정,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여 수입 농산물로부터 역내농산물 보호
 - 공공수매(국내정책), 수입관세 및 부과금(국경정책), 수출보조(무역정책) 등 3가지 정책으로 체계화
- 농가 직접지불(direct payment) 제도
 - 농가소득 지지, 재고부담 완화,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
 - 가격지지 수준을 낮추는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이라 호칭
 - 품목(군)별로 ha당 일정금액을 생산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03년 이후 단일농가직접지불금으로 통합중

-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정책
 - UR이후 가격지지정책의 제약에 따라 WTO 농업협정상 허용보조사업인 농촌개발정책을 가격정책과 더불어 CAP의 주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확대
 - 농림업 경쟁력 강화 : 농가의 농업투자지원과 농산물 가공·유통의 근대화, 고령농가의 조기은퇴 촉진
 -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농촌 소득원 개발 및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지역전통과 농촌환경 유지 : 환경친화적 농업방식 지원 등

(2) CAP 개혁추진 및 최근 논의동향

- CAP은 80년대말까지 생산 지원을 위한 가격지지에 치중
 - 식량자급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과잉, CAP 재정 과다소요 등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개혁 추진
 - 2000년 이후 식품안전 문제(BSE, 구제역 등) 부각, EU 확대, DDA 협상 등으로 보다 획기적인 개혁 필요성 제기
- 2002년 중반 CAP 중간평가(Mid-Term Review)시 급진적 개혁 추진
 -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Single Farm Payment) 도입, 환경농업기준 준수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 2006~2007년 중간평가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과잉생산 등으로 수급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포도주, 과실 및 채소, 바나나 분야의 개혁을 추진, 대부분의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보조금을 단일농가직불제도에 통합
- 2008년 11월 CAP 건전성평가개혁에 합의, 밀, 올리브, 호프, 쇠고기, 쌀, 땅콩, 종자, 감자전분 등 현재 남아있는 생산연계성 직불금은 2012년까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단일농가직불금으로 통합될 예정

- 한편, 농가직불금의 5%(2012년부터 10%)를 농촌개발예산으로 강제 전용하고,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개발,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 농지의 10%를 강제휴경(set-aside)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돼지고기, 쌀 시장 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등 농산물 시장 관리제도를 대부분 폐지
- 2010년에는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의 CAP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
 - 최근 극심해진 농식품 가격 변동 대응 메카니즘,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기능개선방안, 유럽 농식품 생산모델(고품질 정책)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중
 - 프랑스 등 CA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원국들과, 영국 등 CAP 예산을 삭감하여 타부문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회원국들간의 논쟁 진행중

V

한-EU 관계



1 연 혁

- 63. 7. 한-EU 외교관계 수립(주스위스대사 겸임)
- 69.11. 주 EU 상주 대표부 설치(주벨기에대사 겸임)
- 89. 2. 주 EC 대표부 독립공관으로 분리
- 90. 1. 주한 EC 대표부 설치
- 98. 9. 주 EU 대표부 및 주벨기에 대사관 통합
 - ※ 2008.9월 박준우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부임
 - ※ 2006.9월 McDonald 주한 EU 대표부 대사 부임

2 개 관

- 90년대 초까지 한-EU 관계는 통상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냉전 종식 및 유럽연합 출범(93.11월)이후 EU 통합 움직임이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로 확대 발전되어감에 따라 정부대화 채널 수립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 96.10월 우리나라와 EU는 경제·통상·문화·과학기술 등 제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2001.4월 발효)하고, 정치 분야의 협력 및 대화채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한-EU 공동정치선언」을 채택 - 2000년 이후 한-EU 관계가 정치, 경제 등 제방면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기본협력틀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2007년 한-EU FTA 협상을 개시하면서, 기존의 기본협력협정도 정부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을 개시(08.6~09.9)하여

2010.5월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EU 관계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기틀 마련

3 EU의 대한반도 정책

- EU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
 - 우리 정부는 EU-북한간 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EU측과 긴밀한 협조 추진
- EU의 경수로사업 참여 관련, 96.12월 EU의 KEDO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97.9월 가입 협정 서명 및 1996~2005년간 총 1억 1,800만유로 기여
 - EU는 1996~2000년간 총 1억 1,500만유로를 KEDO에 기여
 - 2002.10월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유럽의회의 EU측 기여예산 유보 조치로 인해, EU측은 2003년도부터 KEDO 행정비용 EU 분담금(약 100만유로)만 납부
 - 2006.5.31 경수로사업 종료 합의

4 한-EU간 대화채널

가. 근거 : 한-EU 기본협력협정(2001년 발효) / 기본공동정치선언 및 기본협정

-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주요 외교·국내사항에 대한 대화 및 의회간 교류 규정

- 협정 이행 및 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위 설치 규정

나. 한-EU간 주요 대화채널 설치 현황

- 정상회담(ASEM 정상회의 계기)
 -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 계기 제1차 회담 개최(2002.9)
 - 하노이 ASEM 정상회의 계기 제2차 회담 개최(2004.10)
 - 핀란드 ASEM 정상회의 계기 제3차 회담 개최(2006.9)
 - 2008.10월 북경 ASEM 정상회의 계기 제4차 회담 개최 예정이었으나, EU 의장국 프랑스측 사정으로 연기
 - 제4차 한-EU 정상회담 개최(2009.5.23, 서울)
- 한-EU Troika 외무장관회담(통상 ASEAN PMC 계기 개최)
- 공동위
 - 제1차(01.5, 서울), 제2차(03.7, 브뤼셀), 제3차(04.7, 서울), 제4차(05.6, 브뤼셀), 제5차(06.6, 서울), 제6차(07.6, 브뤼셀), 제7차(09.2, 서울), 제8차(10.3, 브뤼셀)
- 정무총국장(차관급) 회의
 - 제1차(98.2, 런던), 제2차(01.10, 브뤼셀), 제3차(02.3, 서울)
 - 2009.3 신각수 차관-Landaburu 대외관계총국장간 고위정책협의회 실시 (브뤼셀)
- 실무전문가(지역국장급) 회의, 정책기획협의회(정책기획국장), 군축실무전문가(과장급) 회의 등 개최
- 한·유럽의회 의원외교협의회간 교류

다. 주요 협의 현황

(1) 한-EU Troika 외무장관회담

	일시 및 장소	의 장 국	대 표
제1차 (정무총국장급)	89.10 파리	프랑스	이정빈 정무차관보 / Dufourcq 정무총국장
제2차 (외교장관급)	90. 9 뉴욕(UN 총회시)	이탈리아	최호중 장관 / De Michelis 외교장관
제3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1. 7 쿠알라룸푸르 (ASEAN-PMC 회의시)	네덜란드	이상옥 장관 / Van den Broek 외교장관
제4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2. 7.25 마닐라 (ASEAN-PMC 회의시)	영국	이상옥 장관 / Hurd 외교장관
제5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3. 7.27 싱가폴 (ASEAN-PMC 회의시)	벨기에	한승주 장관 / Claes 외교장관, Van den Broek 대외관계집행위원
제6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4. 7.27 방콕 (ASEAN-PMC 회의시)	독일	한승주 장관 / Kinkel 장관, Van den Broek 대외관계집행위원
제7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5. 8. 2 브루나이 (ASEAN-PMC 회의시)	스페인	공로명 장관 / Solana 장관, Marin 대외관계집행위원 등
제8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6. 7.24 자카르타 (ASEAN-PMC 회의시)	아일랜드	공로명 장관 / Spring 장관, Marin 집행위부위원장 등
제9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7. 7.28 쿠알라룸푸르 (ASEAN-PMC 회의시)	룩셈부르크	유종하 장관 / Poos장관, Marin 집행위 부위원장 등
제10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8. 7.27 마닐라 (ASEAN-PMC 회의시)	오스트리아	박정수 장관 / Marin 집행위 부위원장 등
제11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99. 7.25 싱가폴 (ASEAN-PMC 회의시)	핀란드	홍순영 장관 / Marin 집행위 부위원장 등
제12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0. 7.28 방콕 (ASEAN-PMC 회의시)	프랑스	이정빈 장관 / Patten 집행위 대외담당 집행위원 등

	일시 및 장소	의 장 국	대 표
제13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1. 7.26 하노이 (ASEAN-PMC 회의시)	벨기에	한승수 장관 / Michel 외교장관, Patten 집행위원 등
제14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2. 7.31 브루나이 (ASEAN-PMC 회의시)	덴마크	최성홍 장관 / Solana 고위대표 등
제15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3. 7.24 발리 (ASEM 계기)	이탈리아	윤영관 장관 / Patten 집행위원
제16차 (외교장관급)	2004. 7.2 자카르타 (ASEAN-PMC 회의시)	네덜란드	반기문 장관 / Solana 고위대표
제17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5. 7.28 라오스 (ASEAN-PMC 회의시)	영국	반기문 장관 / Pearson 영국의무차관
제18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6. 7.27 쿠알라룸푸르 (ASEAN-PMC 회의시)	핀란드	반기문 장관 / Solana 고위대표
제19차 (외교장관급, Troika 형식)	2008. 7.24 싱가폴 (ARF 회의시)	프랑스	유명환 장관 / Rama Yade 프랑스 국무장관
제20차 (외교장관급)	2009. 3.30 브뤼셀	체코	유명환 장관 / Solana 고위대표
제21차 (외교장관급)	2010. 5.10 브뤼셀 (한-EU 기본협정 서명계기)	스페인	유명환 장관 / Ashton 고위대표

(2) 한-EU 각료회담

차수	시 기	장 소	우리측 수석대표	EU측 수석대표
1차	83. 3.28~29	서울	이범석 장관	Haferkamp 집행위원
2차	84. 7.3~4	브뤼셀	이원경 장관	Davignon 집행위원
3차	85.11.12~13	서울	이원경 장관	De Clercq 집행위원
4차	87. 4.30	브뤼셀	최광수 장관	De Clercq 집행위원
5차	88. 9.15~16	서울	최광수 장관	De Clercq 집행위원
6차	89. 7. 6~7	브뤼셀	최호중 장관	Andriessen 집행위원
7차	91. 5.27	서울	이상옥 장관	Andriessen 집행위원
8차	92.11.10~12	브뤼셀	이상옥 장관	Andriessen 집행위원
9차	93.11.11~12	서울	한승주 장관	Brittan 집행위원
10차	94.10.27	브뤼셀	한승주 장관	Brittan 집행위원
11차	95.11.28	서울	공로명 장관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12차	96.10.28	룩셈부르크	공로명 장관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13차	97.10.26	서울	유종하 장관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14차	98.10.27	브뤼셀	홍순영 장관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15차	2000. 7.20	서울	이정빈 장관	Patten 대외담당 집행위원
16차	2002. 6.4	브뤼셀	최성홍 장관	Patten 대외담당 집행위원

(3) 한-EU 고위협의회

차수	시 기	장 소	우리측 수석대표	EU측 수석대표
1차	86.7.15~16	브뤼셀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Loeff 대외총국 아주국장
2차	90.7.10~11	브뤼셀	이기주 외무부 제2차관보	Giola 대외총국 부총국장
3차	92.7. 8~9	서 울	허 승 외무부 제2차관보	Giola 대외총국 부총국장
4차	93.6.29~30	브뤼셀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Giola 대외총국 부총국장
5차	94.7. 7~8	서 울	정의용 외무부 통상국장	Nuttall 대외총국 아주국장
6차	95.5.10~12	브뤼셀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Giola 대외총국 부총국장
7차	96.6. 9~11	서 울	최 혁 외무부 통상국장	Westerlund 대외총국 아주국장
8차	97.6.17~19	브뤼셀	이태식 외무부 통상국장	Westerlund 대외총국 아주국장
9차	98.5.6~7	서 울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Westerlund 대외총국 아주국장
10차	99.6.28~30	브뤼셀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Westerlund 대외총국 아주국장
11차	2000.3.23~24	서 울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Westerlund 대외총국 한·미·일 국장

※ 한-EU 기본협력협정 발효에 따라 한-EU 공동위로 대체

(4) 한-EU 공동위 개최

- 2001.5 제1차 공동위(서울)
- 2003.7 제2차 공동위(브뤼셀)
- 2004.7 제3차 공동위(서울)
- 2005.6 제4차 공동위(브뤼셀)
- 2006.6 제5차 공동위(서울)
- 2007.6 제6차 공동위(브뤼셀)

- 2009.2 제7차 공동위(서울)
- 2010.3 제8차 공동위(브뤼셀)

(5) 한-EU Troika 정무총국장회의(차관보급)

- 1998. 2 제1차 회의(런던)
- 2001.10 제2차 회의(브뤼셀)
- 2002. 3 제3차 회의(서울)
- 2009. 3 신각수 차관-Landaburu 대외관계총국장간 고위정책 협의회(브뤼셀)

라. 주요인사 교류 실적

- 방 한
 - 76.7.15 Gundelach EC 집행위원
 - 80.5.13 Davignon EC 집행위원
 - 82.4 Narjes EC 집행위원
 - 83.3.27~31 Haferkamp 집행위 부위원장
 - 84.5. 7~ 8 Thorn 집행위원장
 - 86.5.29~6.2 De Clercq 집행위원 등 3명
 - 86.7.15~16 Loeff EC 집행위 대외총국 부총국장
 - 87.2.20~22 Moltke 집행위 DG III 대외담당국장
 - 87.7.11~16 Vaon Rhijn 집행위 산업담당 부총국장
 - 88.1.22~25 Arndt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의장
 - 88.1.31~2.2 유럽의회 사절단(16명)
 - 88.9.15~16 De Clercq 집행위 대외담당위원
 - 89.3.22~24 Bangemann 집행위원
 - 86.6.22~24 유럽의회 기민당그룹 의원단 4명
 - 89.9.25~10.2 Nuttal 집행위 아주국장
 - 89.11.22 Krenzler 집행위 대외관계 총국장

- 90.1.16 Anouil 초대 주한 EC 대사 부임
- 90. 3.25~27 Andriessen 집행위 부위원장
- 95.11.28~29 Brittan 집행위원
- 90. 1.30~2.1 Krenzler 집행위 대외관계 총국장
- 91. 1.30~2.1 유럽의회 기민당그룹 의원단
- 91. 3. 3~5 Leon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 91. 3.19~23 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 91. 5.27 Anariessen 집행위원
- 92. 7. 8~9 Giola 집행위 대외관계 부총국장
- 93.11.11~12 Brittan 집행위원
- 95.11.28~29 Brittan 집행위원
- 96.11.21~23 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 97.10.26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 98.10.13~14 Brittan 집행위 부위원장
- 98.12.12~13 한·유럽의회 친선협회 의원단
- 99.6.7~8 Bangemann 집행위원
- 2000.7 Patten 집행위원(대외담당)
- 2000.10 Prodi 집행위원장(ASEM 정상회의 참석)
- 2001.2 Lamy 집행위원(통상담당)
- 2003.9 Liikanen 집행위원(정보통신담당)
- 2004.2 Busquin 집행위원(연구담당)
- 2004.4 Monti 집행위원(경쟁담당)
- 2006.5 Ferrero-Waldner 집행위원(대외관계담당)
- 2006.6 Kroes 집행위원(경쟁담당)
- 2007.4 Reding 집행위원(정보사회화담당)
- 2007.5 Peter Mandelson 집행위원(통상담당)
- 2007.10 Verheugen 집행위원(산업담당)
- 2008.7 Kovanda 집행위 대외관계 부총국장
- 2009.2 Kovanda 집행위 대외관계 부총국장
- 2009.5 Barroso 집행위원장, Ashton 통상담당 집행위원

○ EU 방문

- 73. 5.20 김중필 국무총리
- 74. 3.27 태완선 부총리
- 74. 7. 3 김신 교통부장관
- 74. 9.29 장예준 상공부장관
- 75. 3.19 김동조 외무부장관
- 75. 3.24 장예준 상공부장관
- 75. 6.23 남덕우 부총리
- 78. 2.22 박동진 외무부장관
- 81. 7 김동휘 상공부장관
- 81. 9 남덕우 국무총리
- 81. 9 서석준 상공부장관
- 83. 3. 7 최종필 주EC대사 부임
- 84. 7. 3~4 이원경 외무부장관
- 84.10.24~26 한·EC 과기협력 관련 전문가단(3명)
- 86. 9.21~24 이종찬 민정당 의원
- 86.10.15~19 유럽 통상사절단
- 87. 2.18~20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
- 87. 4.13 유종하 주EC대사 신임장 제정
- 87. 4.28~30 최광수 외무부장관
- 90. 7.23~25 강영훈 국무총리
- 91. 5.28 안상영 해운항만청장외 2명
- 91. 6.25 이봉서 상공부장관
- 92. 6. 1 최각규 부총리
- 92.11.12 이상옥 외무부장관
- 94.10.26~28 한승주 외무부장관
- 95. 3.14 김영삼 대통령
- 96.10.28 공로명 외무부장관, 룩셈부르크 방문
- 98.10.26~28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 2001.5.12-15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2001.12 김대중 대통령 구주의회 방문
- 2002.6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 2002.9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2002.9 박태영 전남지사
- 2004.9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 2005.1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6.5 박영일 과기부차관
- 2006.9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 2007.1 김성호 법무부장관
- 2007.10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08.10 유인촌 문화부장관
- 2009.3 신각수 외교통상부차관
- 2009.3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 2009.5 문희상 국회부의장
- 2009.10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10.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10.5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마. 국회-유럽의회 관계

-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간의 관계는 유럽议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우리 국회의 한·유럽의원 외교협의회 (Korean-EU Parliamentarians' Council)가 중심
- 유럽의회 사절단이 88.1월 및 91.1월 방한한 이래 상호 교류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 93.5월 우리측 국회위원단의 유럽의회 방문시 매년 사절단을 상호 교류키로 합의
- 94년 이후 유럽의회 대표단과 국회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간에 매년 개최지를 번갈아가면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논의

※ 한국국회-유럽의회간 상호 교류 실적

- 한국국회

- 이재환 국회 사무총장 유럽의회 방문(87.2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김영배 의원) 유럽의회 방문(93.5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강신조 의원) 유럽의회 방문(95.7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이동원 의원) 유럽의회 방문(97.5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이동원 의원) 유럽의회 방문(99.9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정재문 의원) 유럽의회 방문(2000.12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한승수 의원) 유럽의회 방문(2003.5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이상득 의원) 유럽의회 방문(2005.6월)
- 한·유럽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이상득 의원) 유럽의회 방문(2007.6월)
- 구주의원외교협의회 의원단(단장 : 이강래 의원) 유럽의회 방문(2010.1월)

- 유럽의회

- Rinsche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회장 방한(87.5월)
- Arndt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의장 방한(88.1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88.1월)
- 유럽의회 기민당그룹 의원단 방한(89.6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91.3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91.3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94.1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96.11월)
- 독일 유럽의회 의원단 방한(98.11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98.12월)
- Brok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방한(2000.7월)
- 한·유럽의회 의원 친선협회 의원단 방한(2003.4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05.7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06.10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07.6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08.10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09.4월)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방한(2010.6월)

5 경제·통상 관계

가. 일 반

- 최근 5년(2003~2008)간 한-EU 교역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양국간 교역·투자 급성장
 -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전년 대비 수출은 20.2%, 수입은 19.4% 각각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18%와 25.3%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EU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GDP 규모 세계 1위), EU 시장의 단일화 및 확대 등에 따라 EU와의 교역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외상품의 유럽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지 투자 및 현지 생산 확대
- 한-EU 양자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7.5월 EU와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09.10.15 가서명
 - 현재 2010년중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중
- 아울러 상품교역 중심의 양자 통상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를 위해 노력중이며, 한-EU간 경제 동향 및 정책, 경제·과학기술·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및 양자간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매년 한-EU 공동위를 개최

나.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1) 교역(2009년)

- 대EU 수출은 466억불(전년대비 20.2% 감소), 수입은 322억불(전년대비 19.4% 감소), 교역액은 788억불로 중국(1,409억불)에 이어 제2위 기록

※ 2010.1.1-7.20간 수출입 실적 : 수출 291억불, 수입 206억불

- 수출은 중국(867억불)에 이어 2위, 수입은 중국(542억불), 일본(494억불)에 이어 3위, 무역수지는 중국(325억불), 홍콩(182억불)에 이어 3위 기록

〈 한국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09년) 〉

(억불)

국가	총교역액(비중)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지
(전체)	6,866(100.0%)	3,635(-13.9%)	3,231(-25.8%)	404
중국	1,409(20.5%)	867(-5.1%)	542(-29.5%)	325
EU	788(11.5%)	466(-20.2%)	322(-19.4%)	144
일본	712(10.4%)	218(-22.9%)	494(-18.9%)	-276
미국	666(3.1%)	376(-18.8%)	290(-29.9%)	86

* 증가율 : 전년 동기 대비

〈 한-EU간 교역 추이 〉

(억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1-7.20)
수출	484.5	559.8	583.7	466.1	291.4
수입	300.6	368.2	399.8	322.3	206.2
무역수지	183.9	191.6	183.9	143.8	85.2
교역액	785.1	928.0	983.5	788.4	497.6

* 한국무역협회 kita.net

- 한편, 우리나라는 EU의 제11대 수출대상국, 제8대 수입대상국이며, 제8대 교역 파트너
 - EU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이며, 최대 교역 대상국은 미국

(2) 투자 현황

- (EU의 대한국 투자) 누계기준으로 대한민국 제1의 투자주체
 - 2009년까지 누계기준으로 총 564억불을 투자
- (우리나라의 대EU 투자) 누계기준 09.9월 기준 210.6억불을 기록
 - 2006년 전년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들어 경제위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 우리나라의 주요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
 - 중국(400억불), 미국(340억불), 홍콩(112억불), 베트남(104억불)

다. 경제협력 현황

(1) 과학기술

(가) ITER

<사업개요>

- ITER사업은 핵융합발전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장치 건설 사업으로 88년부터 협의 시작
- 동 사업은 500MW급 핵융합실험로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 후 5년간에 걸쳐 해체 예정(건설비 51억유로 포함, 총 112억유로 소요)
 - 회원국 : 한국, 일본,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 ※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추진현황 및 계획>

- 2005. 6. ITER 건설부지, 프랑스(카다라쉬)로 결정
- 2005.12. ITER 공동이행협정 협상 완료(제주 회의)

- 2006.11. ITER 공동이행협정 및 특권·면제협정 서명(과기부총리)
- 2007. 4. ITER 공동이행협정 및 특권·면제협정 국회비준 동의
- 2007. 9. ITER 사업 국내전담기관 지정(과기부고시 제2007-17호)
- 2007.10. ITER 기구(IO) 공식 출범(협정 발효 및 법인격 확보)

(나) 과학기술협력협정

<추진 배경>

- 정부간 협력을 통해 공신력 있는 EU의 과학기술 동향,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를 확보하고, 상호 벤치마킹 가능
 - 또한 EU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Framework Program과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시 협정 미체결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 가능
- EU도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혁신, 연구개발투자 확대, IT, BT 등 일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연구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많은 바,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향후 한-EU간 과학기술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

<추진 경과>

- 2003. 5. 한-EU 과학기술장관회의(브뤼셀), 협정체결 논의
- 2005. 2. 이사회에서 집행위에 협상 mandate 부여
- 2006.11.22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 ※ 서명자 : 과기부장관-EU 연구담당집행위원(핀란드 통상산업부장관)

<주요 내용>

- EU의 연구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에 한국법인의 참여를 통한 한국법인과 유럽연합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한국 연구과제 프로그램에

유럽연합 연구법인의 참여 장려

- 동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조정과 추진은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와 EU 집행위원회가 이행
-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가능한 매년, 상호 합의에 따라 일정을 정하며, 개최지는 교차 개최
- ※ 2009.3.3 제2차 과기공동위 벨기에 개최

(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사업개요>

- 군사목적으로 개발된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차별화된 민간 및 상업적 용도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Satellite Navigation System) 개발 추진
- 동 사업 추진으로 15만명의 고용창출 및 동 프로젝트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을 통한 연간 100억유로의 소득 창출 예상
- 추진 계획
 - 2013년 말까지 34억유로의 예산을 투자해 지구 상공 약 23,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3개의 예비위성 포함)을 배치하여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을 구축

<우리 참여 배경>

-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다원화함으로써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 국내기업의 위성항법시스템 단말기 시장 등의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관련 산업 육성

- EU가 대표적인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EU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확대

<추진 경과>

- 2005. 3. EU측에 갈릴레오 참여의향서 송부 및 회신 접수
- 2005.12.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문안 협상
- 2006. 9. 한-EU 갈릴레오 협력협정 서명
※ 서명자 : 외교통상부장관-EU 대외관계집행위원

(2) 항공협력

(가) 한-EU 항공협정(Horizontal Agreement) 체결 : EU 조항

- EU는 역내 단일항공시장 구축 원칙에 따라 역외국과의 항공협정에 소위 “EU조항”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우리측에 동 조항 삽입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을 요구
※ EU조항(EU Clause)은 EU 회원국 항공사(예: 에어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예: 독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회원국(독일)과 역외 제3국(예: 한국)간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우리측은 2007.1월 한-불 항공회담시 EU조항을 양자적으로 수용하고, 2008.11월 제2차 한-EU 항공회담에서 한-EU Horizontal Agreement에 가서명
※ Horizontal Agreement는 EU 집행위가 역외국가와 직접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개별 회원국과 해당 역외국가간의 양자협정상에 EU clause를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효력을 지님
- 한-EU Horizontal Agreement의 정식 서명 문제 논의중

(나) PNR 정보 입수 사업 추진

- 관세청은 테러 방지 등을 위해 2008.4.1부로 국내외 항공사들로부터 승객예약 정보(PNR: Passenger Name Record) 입수 사업을 추진중
- EU측은 PNR 제공을 위해서는 역외국가가 EU 개인정보 보호에 상응한 보호수준이 입증된 후에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양측 정부간 협정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
- 2009.7월 양측간 사전 기술협의를 개최하는 등 협정 체결 문제 논의중

(3) 경쟁협력

<한-EU 경쟁협력협정 체결>

- 세계 각국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 공동조사 등 글로벌 차원의 경쟁법(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협정 체결이 증가
 - * 경쟁당국 :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 EU는 EU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etition)
 - 단, 경쟁협력협정은 공동 기습조사 실시, 조사자료 공유 등을 담고 있어 상호간에 경쟁법 집행의 전문성 및 역량을 인정하고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협정체결 추진
- 한-EU 경쟁당국은 과거 국제카르텔 공동조사와 Microsoft 사건 처리 등의 과정에서 축적된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차분히 진전
 - 2004년 한-EU 경쟁당국협의회에서 우선 경쟁당국간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어 협정체결 2단계 방식에 합의
 - 2004.10월, 강철규 공정위원장과 Monti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MOU 서명
 - 이후 협정안에 대한 협의 및 내부절차 등을 거쳐 2009.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 외무장관간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7.1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

* EU는 미국('91), 캐나다('99) 및 일본('03)에 이어 우리와 네번째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는 EU와의 협정이 외국과 체결한 첫번째 협정

- 한-EU 경쟁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경쟁분야에서의 한-EU 관계는 한층 심화되고, 우리 경쟁당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강화
 -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에 있어서 EU 경쟁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집행력 강화
 - 동시에 EU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확보

<한-EU 경쟁당국간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

- 한-EU 경쟁당국은 원칙적으로 양측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주요 정책 및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

<최근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 ① 2006.6월 EU의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방한하여 회의 개최
- ② 2007.3월 독일의 국제컨퍼런스 참석 계기에 독일에서 정책협의회 개최
- ③ 2008.12월 한-EU 정책협의회 개최(서울)가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취소
- 협력협정 체결로 최고책임자간 정책협의회의 정례화 및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차원의 접촉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리 기업들의 EU 경쟁법 준수>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쟁법(반독점법)의 준수가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중국도 2008년부터 경쟁법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경쟁법을 도입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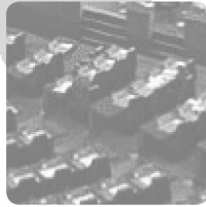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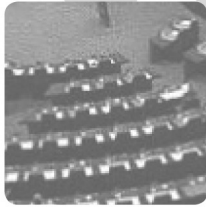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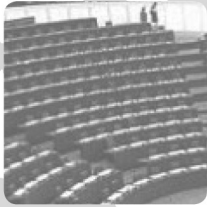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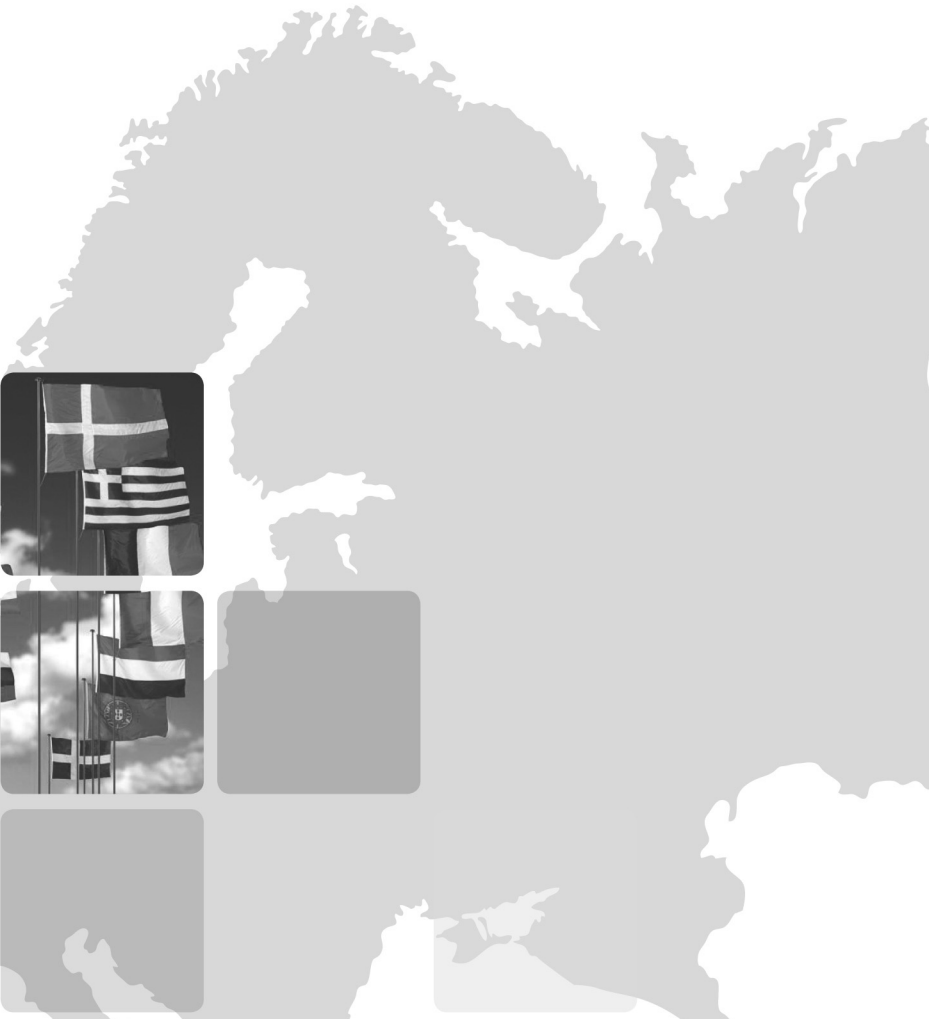
- 특히, EU와 미국은 경쟁법을 가장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양대 축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

- * 우리 기업 벌금부과 사례(미국 및 EU)
 - (미국) 반도체D램 담합(삼성전자 3억불, 하이닉스 1.5억불), 항공화물 담합(KAL 3억불, 아시아나 5천만불), LCD 담합(LGD 4억불)
 - (EU) 반도체D램 담합(삼성전자 1.5억유로, 하이닉스 51백만유로), 나머지 담합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중
- * 우리나라 STX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Aker Yards 인수에 대한 EU 경쟁당국 M&A 심사를 매우 힘들게 통과한 사례(08.5월)

- EU는 갈수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자칫 우리기업의 범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벌금부과 및 소비자로부터의 신뢰상실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EU 진출 우리 기업은 경쟁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범위반 예방시스템 정비 등 자체적 노력과 공관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
 - * 예시 : 우리기업 최고경영자에게 EU 경쟁법 준수를 당부하는 EU 대사 명의의 서한 발송(08.12월), 유럽주재 법인장들에 대한 EU 경쟁법 교육 등 실시

VI

EU-북한 관계



1 EU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 및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 및 지원
- 남북관계 개선, 북한 인권문제, WMD 문제, 북한의 개혁·개방 등 대북 관심사항에 대한 북측 태도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 원조의 신중한 확대 추진
 - 2001.11월 대북 행동지침 채택(EU 외교장관회의 합의문)

〈 EU의 대북정책 관련 주요 결정 〉

1. 대북행동지침(Guideline for Action) 채택(2000.11월 EU 외교장관회의 합의문)
 -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
 - 인권, 핵, 미사일 등에서의 북한측 태도 변화에 맞추어 대북관계 개선 추진
 - 남북한간 대화와 화해 과정에 계속적 기여
 - ※ 상기 지침에 의거 EU 집행위는 2001.5.14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하고 2002.6월 검입공관 지정에 대한 각서 교환
2. 북핵위기 발생 후 대북정책 관련 EU 이사회 결론(Presidency Conclusions) 채택 (2002.11월)
 -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 촉구
 - EU의 기술지원 및 교역상 특혜조치를 포함한 대북지원 재검토(단, 식량 및 인도적 지원은 유지)
 - 한반도 화해과정 지지
3. 2003.12월 EU 정상회의 결론(Presidency Conclusions) 채택
 - 북한핵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핵폐기 촉구
 - 북한의 국제적 비확산의무 완전 이행시 대북 협력제고 가능
 - 한반도 화해과정 지지
4. 2006.10월 의장국 성명, 고위대표 성명, 외교장관회의 결론 채택
 -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조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 표명

5. 2009.6월 EU 정상회의 선언 채택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09.4월) 및 핵실험(09.5월)을 규탄
- 또한, UN 안보리 결의 1814호에 따라 09.7.27 EU 외교장관회의시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공동입장(Common Position)’을 채택한 데 이어, 09.12.22 기존의 이사회 규정을 개정, 유엔제재위원회에서 결정(5인 및 8개 회사) 외에 EU 자체적 기준에 합치하는 13명 및 4개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

6. 2010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고위대표 성명 및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의 극악하고 무책임한(heinous and irresponsible)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Ashton 고위대표 성명 발표(10.5월) 및 유럽의회 결의안 채택(10.6월)

2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

- 2000.6월 남북 정상회담 및 2000.10월 서울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EU 정상들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남북한 화해정책 지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000.9월 북한측은 백남순 외무상 명의 서한을 통해 EU 회원국에 수교 제의
 - 프랑스,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이 북한과 수교
- EU 집행위는 2001.5.14 북한과의 수교를 발표하고 2002.6월 검임공관 지정에 대한 각서 교환
 - 주한대사가 북한을 검임하는 ‘Benelux Formula’ 채택
- 주EU 북한 상주공관 설치문제는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남북관계, EU-북한관계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

3 EU-북한 고위인사 교류

- EU 고위대표단 방북(2001.5.2~3)
 - 대 표 단 : Persson 스웨덴(당시 EU 의장국) 총리, Solana 고위대표, Patten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등
 - 주요성과 : 북한의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미사일 시험발사 2003년까지 유예준수 확인, EU-북한 인권대화 개최 합의 등
- 북한 외무성 공석웅 부상 EU 방문(2008.5.6~8)
 - Ferrero-Waldner 대외관계담당 집행위원, Cooper 이사회 정무총국장, Pirker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장 등 면담

4 EU-북한 정치대화

- EU는 98년 이래 Troika 차원의 외교부 지역국장급 정치 대화를 매년 개최
- 2005년도부터 EU의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 상정을 이유로 북한측이 정치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중단되었으나, 2007.2.13 합의 이후 재개
 - 07.3월, 12월 및 09.3월, 10월 정치대화 개최(평양)

5 북한 핵문제

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EU의 기본입장

- 북한 핵문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WMD 비확산 차원의 범세계적 문제로서 EU의 주요 관심사항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으나,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기여 용의
 - 한·미·일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북원조 주요 공여자로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
 - ※ EU는 96.12월 KEDO 가입 협상이 타결되어 97.9월 가입협정 및 1996-2005년간 총 1억 1,800만 유로 기여

나. EU의 대응 현황

- (1) 2002.10월 미측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 인정 발표 이후 주요 계기별 EU 의장국 선언, EU 외교장관회의 결론 등 수시 채택

- 2002.11.19 EU 외교장관회의 결론(Council Conclusions) 요지

- ※ EU의 대북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 촉구
- EU의 기술지원 및 교역상 특혜조치를 포함한 대북지원 재검토(단, 식량 및 인도적 지원은 유지)
- 한반도 화해과정 지속 지지
- 필요시 EU의 대북정책 재검토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핵개발 계획 폐기 및 핵동결 유지 설득이 긴급

- 2006.10월 EU 의장국 성명, 고위대표 성명, 외교장관회의 결론 채택
 -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안보리결의 1718호의 충실한 이행 의지 천명
- 2009.6월 EU 정상회의 선언 채택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09.4) 및 핵실험(09.5)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요지
- 2009.12.23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채택

- 06.11월 채택된 공동입장을 개정, 유엔재재위원회가 결정한 5명의 북한 인사 및 8개 회사 외에 EU 자체적으로 제재 기준에 합치하는 13명의 인사 및 4개 회사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
- 07.3월 채택된 이사회 규정을 개정, 유엔 안보리 1874호에 근거한 EU 차원의 구체적 제재 조치를 결정

(2) EU Troika 국장급 대표단 방북 계기 북핵문제 해결 촉구

- 북핵문제 해결시 EU의 대북경협 확대 등 관계 개선 용의 표명

6 북한 인권 문제

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EU의 기본 입장

- EU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engagement 추진
 - ※ EU는 2001년 이래 인권문제, 민주주의, 법의 지배가 EU의 제3국과의 관계에 있어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개별국가들과 인권대화를 추진
- 인권문제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EU-북한관계의 유지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

나. EU-북한간 인권협의 경과

- 2001.5월 스웨덴 Persson 총리, Solana EU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Patten 대외관계 집행위원을 대표로 하는 EU 고위대표단 방북시, 양자간

인권대화 개최에 합의

- 2001.6월 제1차 EU-북한 인권대화(브뤼셀)
- 2002.6월 제2차 EU-북한 인권대화(평양)
- EU-북한간 공식 인권대화는 상기 2회로 종료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2003년부터는 다시 양자간 정치대화 계기(2003.12월 및 2004.11월)에 EU측에서 북한 인권 문제 거론
 - 2005년 정치대화는 북한측이 EUI의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에 대한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2007.3월 재개
- 유럽의회는 2006.6월, 2010.7월 북한 인권결의 채택

7 EU의 대북한 지원

가. 경 과

- EU는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국제사회에 최초로 지원을 요청한 1995년 이래 약 3.68억유로 지원
- 1995~97년간은 주로 식량, 비상약품, 담요, 텐트 등의 물품을 지원
- 97년 이래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량안보 (Food Security)”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로 비료지원, 농업 관련 장비지원 및 농업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 2003년 이후로는 농업관련 능력배양과 더불어 식수개발, 위생시설 복구, 보건, 지역사회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동 사업들은 북한에 상주하면서 명목상 EUPS(European Union Project Support) 명칭하에 활동하고 있는 6개의 유럽 NGO들을 통해 시행 중

※ 2005년말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및 NGO 추방 조치 이후, EU-북한간 실무적 합의를 통해 소수의 NGO들에 한해 EUPS 명의로 북한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나. EU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식량지원 포함) 실적(1995~2009년)

(단위: 백만유로)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액
원조 총액	0.29	0.5	77.6	59.9	34.8	33.4	27.9	41.7	25.3	21.9	24.9	10	10	7	9	368.6

다. EU-북한 경제워크샵

- EU는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노하우 전수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경제개혁 워크샵을 실시
 - 2006년, 2009년 북핵 실험 등으로 미 실시
- 2008.5월 체코는 북한 경제관리 초청 체제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개최
 - 북한 상공연합회 부회장 등 국·과장급 인사 7명 참석

라. 향후 지원 전망

- EU는 인도적 지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2008.5월 종료하고, 현재는 식량안보 및 능력형성 중심의 지원사업 시행중
 - 개발원조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 계속 유보한다는 방침
 - ※ EU는 대외원조에 있어 “긴급구조 → 재건지원 → 개발원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식량안보와 능력형성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개발원조가 아닌 개발지향원조(development-oriented assistance)에 해당

- EU의 대북지원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NGO를 통한 간접 방식의 소규모 지원사업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08~2010년간 대북지원 예산으로 매년 900만유로 책정

부 록



■ 참고자료 : 주요인사 인적사항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성 명 : 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 국 적 : 벨기에
- 생년월일 : 1947.10.31
- 학 력 : 1968 가톨릭 루뱅대학교 철학과 졸업
1971 가톨릭 루뱅대학교 경제학 석사
- 경 력
 - 1972~1975 벨기에 국립은행 근무
 - 1975~1978 Tindemans 총리 내각 자문관
 - 1978~1980 Geens 재무장관 자문관
 - 1980~1988 CPESS(정치·경제·사회 연구소) 소장
 - 1988~1995 기독교민주당(CVP) 소속 상원의원
 - 1993~1999 부총리 겸 예산장관
 - 1995~ 화란어권 기독교민주당(CD&V) 소속 하원의원
 - 2004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 2007.7 하원의장
 - 2009.1~11 벨기에 총리
- 가족 사항 : 부인 및 자녀 4

▶ EU 집행위원장

- 성 명 :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e Manuel Durão Barroso)
- 국 적 : 포르투갈
- 생년월일 : 1956.3.23
- 학 력
 - 리스본 법대 졸업
 - 스위스 제네바대학 사회정경학부 정치학 석사
 - 스위스 제네바대학 유럽학 과정 수료
- 경 력
 - 1980 사회민주당(PSD) 입당
 - 1985.10 국회의원(리스본시 선거구)
 - 1985~1987 내무차관
 - 1987.7 국회의원(Viseu시 선거구)
 - 1987~1992 외교·협력차관
 - 1990 앙골라 MPLA 및 UNITA 간 Bicesse 평화협정 중재
 - 1991.10 국회의원(Viseu 시 선거구)
 - 1992~1995 외무장관
 - 1995~1996 국회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
 - 1999.5 사회민주당 당수직 선출
 - 1999.7 유럽국민당(PPE) 부의장
 - 1999.10 국회의원(리스본시 선거구)
 - 2000.2 사회민주당 당수직 재선출
 - 2001.12 Valpaços 시의회 의장
 - 2002.4 총리 취임
 - 2004.11 EU 집행위원장(09년 재선)
- 가족관계 : 부인 및 3남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성 명 : 캐서린 마가레트 애쉬톤(Catherine Margaret Ashton)
- 국 적 : 영국
- 생년월일 : 1956.3.20
- 학 력 : Upholland 고등학교 졸업
Bedford 대학 졸업
런던 대학(경제학 석사 1977)
- 경 력
 - 1981~1983 교육 및 직업훈련 중앙위원회 위원
 - 1983~1989 Business in the Community라는 자문기관내 지역사회 개발 및 공공정책 국장
 - 1989 공공 정책 자문관, Hertfordshire주 보건국 국장
 - 1999 종신 상원의원 임명
 - 2001~2004.8 교육기술부 정무 차관 겸 대변인
 - 2004.9~2007 법무부 정부 차관 겸 대변인
 - 2006 추밀원(Privy Council)
 - 2007.6~2008.10 상원 대표(Leader of the House of Lords)
 - 2008.10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2009.12.1 초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수 상
 - House Magazine이 선정하는 Minister of the Year상 수상
 - Channel 4의 “올해의 상원의원상(Peer of the Year)” 수상
- 가족 사항 : 남편 및 자녀 2

▶ 유럽의회 의장

- 성 명 : 예지 부젝(Jerzy Buzek)
- 국 적 : 폴란드
- 생년월일 : 1940.7.3
- 학 력
 - 1963 Silesia 대학 기계-에너지과 졸업
 - 1972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장학금으로 캠브리지대에서 연구원 자격으로 체류
 - ※ 서울대 및 도르트문트대 명예박사(1999년 폴란드 총리 재임기간중 공식 방한)
- 경 력
 - 1980~ 자유노조(solidarity), 반공산주의운동에 적극 참여
 - 1997 폴란드 하원(Sejm) 의원에 당선
 - 1997~2001 폴란드 총리(1999년 NATO 가입)
 - 2004~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국민당 그룹, EPP)
 - 유럽의회내 우크라이나 관계 대표단 소속의원으로 오렌지 혁명 지지
 - 유럽에너지포럼(European Energy Forum) 부회장
 - 2009.7.14 동구권 인사 최초로 유럽의회 의장으로 선출

■ European Union Institutions – Web Sites

EU Portal site:

http://europa.eu/index_en.htm

European Parliament :

<http://www.europarl.europa.eu>

Information Offices :

<http://www.europarl.europa.eu/addresses/offices/default.htm>

Political Groups :

<http://www.europarl.europa.eu/groups/>

The Future of Europe–ebate :

<http://europa.eu/constitution/futurum>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http://consilium.europa.eu/>

European Union Presidency websites :

<http://www.eu2009.cz/en/>

European Commission :

<http://ec.europa.eu>

Information Sources and Contacts :

http://europa.eu/geninfo/info/index_en.htm

European Social Fund :

http://europa.eu.int/employment_social/esf/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ttp://epp.eurostat.ec.europa.eu>

Joint Research Centres :

<http://ec.europa.eu/dgs/jrc/index.cfm/>

other Agencies and Bodies (E.M.E.A., EEA, CEDEFOP, ...) :

http://europa.eu/agencies/index_en.htm

Translation Centre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 :

<http://www.cdt.europa.eu>

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 :

<http://www.eionet.europa.eu>

RAPID – the Spokesman’s Serv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

<http://europa.eu/rapid/>

European Documentation Centres :

http://ec.europa.eu/justice_home/doc_centre

Representations in Member States :

http://ec.europa.eu/represent_en.htm

Websites of Delegations :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delegations/intro/web.htm

CELEX :

<http://www.europa.eu.int/celex>

Information Society Project Office (ISPO) :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

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CORDIS) :

<http://cordis.europa.eu>

Eurobarometer – the public opinion analysis sector of the European Commission :

http://ec.europa.eu/public_opin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ttp://www.curia.eu>

European Court of Auditors :

<http://www.eca.europa.eu>

European Central Bank :

<http://www.ecb.int>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http://www.eesc.europa.eu>

Committee of the Regions of the European Union :
<http://www.cor.europa.eu>

European Investment Bank :
<http://www.eib.org>

EUR-OP: Office for Publications :
<http://publications.europa.eu/>

sales agents :
<http://publications.europa.eu/others/agents>

Official Journal, Treaties, Legislation – EUR-Lex :
<http://eur-lex.europa.eu>

TED – Tenders Electronic Daily, Supplements to the Official Journal :
<http://ted.europa.eu>

European Ombudsman :
<http://www.ombudsman.europa.eu>

European Police Office – EUROPOL :
<http://www.europol.europa.eu>

European Space Agency :
<http://www.esa.int>

Who's who in the European Union? – Interinstitutional Directory :
<http://europa.eu/whoiswho/public>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irenze :
<http://www.iue.it>

Historical Archiv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ttp://www.iue.it/ECArchives/EN/>

... and other useful links

Mailboxes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
http://europa.eu.int/geninfo/mailbox/index_en.htm

Euro-Sites :
<http://euro.eu.int> , <http://www.euro.ecb.int>

Dialogue with Citizens and Business :
<http://citizens.eu.int>

Governments on-line :
<http://europa.eu/abc/governments>

Council of Europe :
<http://www.coe.int>

Parliamentary Assembly :
<http://assembly.coe.in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http://www.echr.coe.int>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
<http://www.ccre.org>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
<http://www.coe.int/t/Congress/defaul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http://www.oecd.org>

European Youth Parliament :
<http://www.eypej.org>